연구보고서 2016-44-05

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 접근

서문희 · 양미선 · 강기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재)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책임연구자】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주요 저서】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3(공저)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증가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2015(공저)

【공동연구진】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강기숙 한국보육진흥원 홍보기획팀장

연구보고서 2016-44-05

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 접근

발 행 일	2016년 12월 31일
저 자	서 문 희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가 격	5,000원

ISBN 978-89-6827-414-5 93330

제출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 「보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서 문 희

목 차

표 목차

부표 목차

그림 목차

부그림 목차

Abstract

Micro & macro approach on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policy and fertility

The present report reviews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willingness to birth. The analysis model was path model using Amos program.

In the past ten years, financial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ree education and care as well as childrearing subsidy have been provided to all 0-5 years old children. Consequently the rate of registered children at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o increase rapidly.

However, the financial support and high register rate at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had weak relation with willingness to birth and no relation with mother's work. Even though merger, macro community child care or kindergarten infra as well as micro personal use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had effects on willingness to birth. But the relation between willingness to birth and mother's work showed negative.

This merger relationship between register rate at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and willingness to birth suggested the need of more delicat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reflecting mother's work and demand for high-quality service.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발생 구조가 복잡한 만큼 그 해법도 간단치 않음을 잘 알면서도 보육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돌봄지원과 관련된 거시자료 분석, 개인 단위 미시자료 분석 및 거시-미시 통합자료 분석으로 돌봄지원과 출산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결혼·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정책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시계열 통계 자료 분석이나 시·군·구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가구 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한 면은 있고 그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보육정책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계열 자료를 보면 영유아기 재정 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육이나 유아교육 확충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아무 관련이 없고 합계출산율에는 부의 방향으로 관련 있음을 나타냈다. 시·군·구 단위 경로분석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변수들은 합계출산율 변화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통제변수 미포함 시 지원시설공급률이 합계출산율 초기치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초혼

연령 등 인구 및 사회경제적 지역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할 경우에 이마저도 의미가 사라졌다.

가구 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기관이용시간은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추가출산의사와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2012년에 통제변수가 포함되면서 추가출산의사에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이 추가출산의사에 부적으로 작용하지만 만 5세아 및 영아 무상보육이 추진되는 환경에서는 기관서비스의 장시간 이용이 취업모 지원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모의 취업과 상관성이 높은 혈연양육시간은 추가출산의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2012년의 경우, 통제변수 미포함 분석에서는 추가출산의사와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모의 취업과 상관성이 높으나 대체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비혈연양육시간은 추가출산의사에 부의 방향으로 관련성을 갖거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지원 여부는 2009년에는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로, 특히 한 자녀 가구의 추가출산에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2년에 이러한 의미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무상보육 등으로 상대적 차별성이 없어졌거나 취업부모 역차별 인식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정책만족도와 취업 여부와의 관련성 자체가 부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한편, 거시-미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 시·군·구의 보육공급률, 국공립공급률,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과 같이 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시 요인들이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나타냈다.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직접보다는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 방식이 우세하다. 전체적으로는

2009년은 국공립과 지원시설공급률이 유의도 10% 수준에서, 2012년은 보육공급률과 국공립보육공급률이 모두 정의 방형으로 각각 유의도 5% 및 10% 수준에서 관련을 나타냈다. 한 자녀 가구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 의사에 지원시설공급률이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보육정책이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출산 결정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영유아기 투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여성 취업 자체가 출산에 대체로 부의 관련성을 보이므로 지역 내 보육이나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출산에 기여한 바가 상쇄되거나 방향이 다르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2년에 모 취업이 보육정책만족도와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은 최근의 보편화된 보육정책이 취업모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영유아 지원정책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한 채 획일적 확대일로로 추진되어 온 결과라 하겠다. 앞으로 보육이나 유아교육정책이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 등 실보육 수요와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주요 용어: 보육정책, 보육 서비스, 저출산 대책

제 1 장 서 론

1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출산 수준이 1.3 미만의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장기간 머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아동 돌봄지원은 그 대상이나 지원 수준이 2004년 이후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보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보육정책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 환경적 여건의 하나로 낮은 출산 수준이 자주 언급되었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성 노동력의 활용과 생애주기 중 아동기의 조기 발달 지원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 2004년 이후 급격하게 확대된 보육비용 지원정책을 기본적 자녀양육 지원정책 및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 간주하였다. 보육정책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분에 힘입어서 보육 재정이 급속한 속도로 확대된 것이다.

시계열 통계를 보면 출산과 아동 돌봄지원 확대와의 관계는 미약하거나 거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예산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출산 수준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저출산 대책으로 돌봄지원의 위상도 낮아졌다.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원인들 간의 역학 관계 또한 매우 복잡하다. 영유아기의 돌봄지원에 대한 재정 투자만으로 출산 수준이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보육 등 돌봄지원의 1차적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부

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족복지의 증진에 있고,[1] 그 파급효과가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출산 자체를 돌봄지원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돌봄지원정책의 다양성이나 지원수준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정책인지는 검토되어야 한다. 아동 돌봄지원은 출산력 회복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돌봄지원에 대한 뒷받침 없이 다른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돌봄지원은 최근 들어서 다양성을 보완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획일성이 강하였다. 부모 지원 방식은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 이용 비용 지원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양육수당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현금 지원보다는 시설 보육에 대한 대체 지원으로 서비스로의 성격을 갖는다(고제이 등, 2015). 돌봄 서비스도 시간제, 돌봄인력 파견 서비스 등이 있으나 접근성은 제한적이다. 초등돌봄은 그간은 돌봄의 사각지대로 평가되어 왔고, 현재 1~2학년 중심으로 약 23만 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고 있다.

또한 돌봄지원이 부모의 근로와 연계성도 미약하다. 소규모 사업인 아이돌봄이나 시간제보육에서 부모의 근로와 연계하고 있으나 돌봄지원사업의 주류인 보육기관 서비스는 2016년 하반기에 도입한 맞춤형과 종일형 보육의 구분이 안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초등돌봄 역시 취업부모 자녀가 지원 대상이지만 부모의 근로가 이용의 엄격한 기준은 아니다.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 책임의 공보육을 지향하는데 과연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비판의 대상이다. 보육,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설치, 비용, 지도 감독 차원에서 국가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1) 영유아보육법[시행 1991. 1. 14.]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제1조(목적) 참조.

결정된다. 먼저 설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국가 책임의 공보육을 강조하지만 서비스 공급의 70% 이상을 민간에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10% 정도를 담당할 뿐이다. 유아교육의 경우에도 공공의 비율은 유치원으로는 52%이지만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전체 원아의 24% 정도에 불과하다.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고, 유치원 공급 자체도 충분하지 않아서 유치원 입학 당첨은 행운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비용 지원 측면에서도 특히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유아의 경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수준과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의 격차가 크다. 보육료는 상한선을 두어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서비스의 질이 제한을 받고, 유치원은 가격 자율화로 부모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지도 감독이라는 관점에서도 정부의 개입은 충분하지 않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평가, 장학 등으로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평가(인등)제도 이외에 공무원 지도 점검, 부모 모니터링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운영자들이 국가로부터 질 높은 수준의 관리를 받는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현재와 같은 돌봄지원 체계로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한다. 돌봄지원 체계의 개선이 출산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의 불충분, 대상 집단의 정합성, 수단의 효율성, 유기적 연계성 등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거시 및 미시적 분석으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돌봄지원의 정합성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결혼·출산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돌봄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반등세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돌봄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및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돌봄지원이 출산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기관 서비스, 개별 서비스 등 현재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미시 및 거시적 접근법으로 지원정책과 출산과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시계열 및 시·군·구 단위에서 출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개인 단위에서 추가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아동돌봄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개인 단위 추가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돌봄 관련 요인으로 시·군·구 보육 및 유아교육 환경이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 방식, 재정 지원 방식의 적합성과 충분성 등 돌봄지원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기존 자료 수집 및 통계분석 방법이다.

먼저,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돌봄의 실태를 진단하고, 돌봄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거시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1995~2014년의 시계열 자료와 2008~2014 시·군·구 단위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시 분석 자료로는 2009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 중 관련 변수를 선별하여 파일을 구축하였다. 통계분석은 단순상관관계분석, Amos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와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시계열 및 시·군·구 단위 돌봄 관련 요인과 합계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이다. 분석 방법은 회귀분석과 잠재성장곡선모텔이다. 공변량 변수를 이용한 잠재성장곡선모델링(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GC)은 세 번 또는 그 이상의 종단 자료나 패널 자료에 대하여 집단 평균 및 변화량을 확인하는 연구 방법으로(김계수, 2009; Dunn et al., 1999) 어떤 변인의 변화 경향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둘째는 개인 단위 조사 자료를 이용한 돌봄지원과 출산 행태와의 관련성 분석으로, 2009년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추가출산의사이고 독립변수는 보육 관련 서비스 이용, 정부보육지원 수혜 여부, 보육지원 정책만족도이며 아동, 가구 및 어머니의 제 특성이 독립, 매개 및 통제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은 Amos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통제변수의 사용 여부에 따라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고, 정책만족도를 종속변수인 동시에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경로분석에 사용된 변인

구분		내용
종속변인		추가출산의사
독립변인	미시변인	정부지원 여부, 평일 기관이용시간, 평일 혈연양육시간, 평일 비혈연양육시간, 보육지원 정책만족도
	거시변인	보육공급률, 국공립시설공급률,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 유치원이용률
매개변인		보육지원 정책만족도
통제변인		거주지역, 아동 월령, 자녀 수, 모 연령, 모 학력, 모 취업 여부, 가구소득

세 번째로는 거시-미시 통합 분석으로 미시 개인 단위 조사 자료에 해당 시·군·구 단위 통계 자료를 추가하여 거시 돌봄 관련 환경 요인 및 개인 요인들과 개인의 추가출산의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추가출산의사이고 이 외 보육 관련 서비스 이용, 보육지원 수혜 여부, 보육지원 정책만족도와 같은 개인 미시변수와 거시변수로 해당 시·군·구 보육 관련 공급률과 유아교육이용률2)이 사용되었다. 통제변수로 미시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아동, 가구 및 어머니의 제 특성이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도 미시 분석과 동일하게 Amos 구조방정식모형이며, 통제변수의 사용 여부에 따라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고, 정책만족도를 종속변수인 동시에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연구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2) 유아교육공급률 지역 통계가 부재하여 이용률 통계를 사용하였음.

제 2 장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배경

연구의 배경으로 제2장에서는 자녀양육지원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국내외 선행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제1절 자녀양육지원 현황과 문제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공적·사적 양육지원 가능성은 부모의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자녀를 출산한 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면 최근에는 지원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후에 출산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개별 보육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는 가정으로의 파견 서비스로 아이돌보미와 같은 공적지원 사업도 있으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베이비시터 서비스도 있다. 세 번째 양육지원은 가족 지원 네트워크이다.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 지원의 양상이나 의미가 많이 달라졌으나 이는 여전히 중요한 양육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지원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지원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정부가 물리적·인적 지역사회 육아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주민 자발성에 의한 상호 지원은 잘 안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이다. 재정 지원은 앞의 네 가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일 수 있고 또한 이와 별도의 현금으로 지원될 수 있다.

제2절에서는 이와 같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지원하는 각 방안들을 현황과 문제 중심으로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을 서비스 공급 구조, 운영비 규모, 서비스의 질, 보육과 유아교육 전달 체계 차이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가. 개인 설치 운영 기관 위주의 공급 구조

어린이집은 설치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개인 투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 법인, 직장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비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유형별 구성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6.2%, 법인어린이집이 3.6%로 소수이고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다(표 2-1 참조).

보육아동은 2014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약 전체 보육아동의 11.4%이고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0.1%인 데 비해 보육아동의 75.2%가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닌다(표 2-2 참조).

〈표 2-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6-2015

(단위: 개,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5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785	155
(비율)	(100.0)	(6.2)	(3.3)	(2.0)	(34.4)	(51.9)	(1.8)	(0.4)
2014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692	149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619	129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523	113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1996	12,098	1,079	1,280	69	4,688	4,865	117	미분류

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6년 ‘부모협동어린이집’이 ‘협동어린이집’으로 용어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표 2-2〉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6-2015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5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77	44,765	4,127
(비율)	(100.0)	(11.4)	(6.9)	(3.2)	(51.5)	(23.7)	(3.1)	(0.3)
2014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9,265	3,774
2013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4,479	3,226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881	2,913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98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1996	403,001	85,121	99,119	2,735	153,990	58,440	3,596	미분류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기업이 설치 주체인 직장어린이집은 그동안 각종 지원과 더불어 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체 명단 공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의무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율은 50%

를 조금 넘고[3] 직장보육이 전체 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에 불과하다(표 2-3 참조).[4]

〈표 2-3〉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설치 현황

(단위: 개, %)

구분	의무사업장 (개)	의무 이행 사업장				미이행 사업장
		계	설치	수당	위탁	
2015	1,143	605(52.9)	578	-	27	538(47.1)
2010	833	578(69.4)	312	208	58	255(30.6)
2005	787	302(38.4)	170	105	27	485(61.6)

주: 2015년에 의무이행률이 하락한 이유는 의무이행 기준 변경 때문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4. 29.).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통계 및 내부 자료.

〈표 2-4〉 공공형어린이집(2016년 기준)

(단위: 원, %)

	전체		공공형어린이집			
	개수	아동	개수	비율	아동	비율
전체 어린이집	42,790	1,393	1,784	4.2	91	6.5
민간어린이집	14,641	718	1,161	7.9	80	11.1
가정	22,400	319	611	2.7	10	3.1
법인·단체 등	842	46	12	1.4	1	2.2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한편 중앙정부는 개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 보육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고[5]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마다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기

3) 의무이행률이 낮아진 것은 의무이행률 기준 변경 때문으로, 2015년 이전에는 보육수당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던 것을 2015년 이후 의무 이행 수단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위탁보육만 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던 것을 근로자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 위탁보육해야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4) 영유아보육법[시행 2015. 1. 1.] [법률 제12619호, 2014. 5. 20. 일부 개정]

준과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 4.2%, 아동 6.5% 수준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6년 7월 현재 1,928개이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유치원도 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이 다수이다. 유치원 수는 2010년 정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5년 현재 8,930여 개에 이르고 원아 수도 68만 2,000여 명에 이른다. 공사립을 구분해 보면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52.4%를 차지하고 원아 수로는 23.6%가 공립유치원에 다닌다. 공립유치원은 농어촌 초등병설유치원이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표 2-5〉 유치원 유형별 수 및 원아 수: 1995-2015

(단위: 개, 명, %)

구분	유치원 수			원아 수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2015	8,930	4,678	4,252	682,553	161,339	521,214
(비율)	(100.0)	(52.4)	(47.6)	(100.0)	(23.6)	(76.4)
2014	8,826	4,619	4,207	652,546	148,269	504,277
2013	8,678	4,577	4,101	658,188	142,052	516,136
2012	8,538	4,525	4,013	613,749	127,347	486,402
2011	8,424	4,502	3,922	564,834	126,095	438,739
2010	8,388	4,501	3,887	538,587	126,577	412,010
2005	8,275	4,412	3,863	541,603	124,283	417,320
2000	8,494	4,176	4,318	545,263	122,208	423,055
1995	8,960	4,417	4,543	529,265	114,380	414,885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

나. 정부 비용 지원과 운영비 확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교육 공급 구조는 민간이 중심인 구조이다. 이러한 공급 구조 속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은 무상보육이다. 어

5)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제도가 있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함.

린이집은 구조적으로 보육료 상한선을 두어 추가 부담을 금지하고, 유치원은 가격 상승률을 규제하지만 교육비 부모 부담금을 허용한다. 운영자 입장에서 각각 운영비 확보 특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시설보조금과 부모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는 시설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원장 및 영아 80%, 유아 30%이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는 영아에 대해서만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영아 기본보육료 개념은 사실상 모호하지만 운영비 지원 형태로 분류한다. 부모 보육료 보조금은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표 2-6〉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금액(2016년 기준)

(단위: 원)

나이	보육비			유아학비	
	부모 보육료 (종일)	민간시설 기본보육료	국공립, 법인 인건비 지원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만 0세	418,000	383,000	원장 80%, 교사 80%	-	-
만 1세	368,000	185,000		-	-
만 2세	304,000	121,000		-	-
만 3세	220,000	-	원장 80%, 교사 30% (방과후과정비 4만 원 내외)	국공립 6만 원, 사립 22만 원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
만 4세	220,000	-			
만 5세	220,000	-			

주: 지원 기준 비율은 부모 부담 보육료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교육부(각 연도). 내부 자료.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운영비의 반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체에 따라 지원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2016년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1)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급여 차액 보전 명목으로 종일반 담임교사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고, (2) 학부모 차액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등에 따른 비용 손실 보전으로 유아 반당 60만 원을 지원하며, (3)시설

환경 개선 및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영유아 현원 기준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한다.

유치원의 경우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는데 공립은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이고 교육비는 실비이며, 사립은 유아학비로 운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급 주체의 차이는 정부 지원의 차이로 연결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총보육·교육비용의 차이는 다시 인력, 서비스 수준 및 부모의 부담 차이로 연결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 반 편성 기준 20인, 35인, 50인 어린이집 연령별 아동 수 모형을 설정하고(표 2-7 참조), 운영비를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에만 적용하여 수입 구조를 산정하면 〈표 2-8〉과 같다.

〈표 2-7〉 어린이집 규모별 반 기본 구성

(단위: 개)

구분	전체	0세아 반	1세아 반	2세아 반	3세아 반	4. 5세아 반
20인	4	1	2	1	-	-
35인	5	1	2	1	1	-
50인	5	1	1	1	1	1

자료: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2014).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표 2-8〉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금액(2016년 기준)

(단위: 원, %)

구분	인건비 미지원			인건비 지원			비율 (A/B)
	보육료	기본보육료	계(A)	보육료	인건비	계(B)	
20인	6,962	3,946	10,908	6,962	9,520	16,482	66.2
35인	10,937	3,946	14,883	10,937	10,189	21,126	70.4
50인	14,447	2,971	17,418	14,447	9,075	23,522	74.1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금 이외의 추가 비용 부담 발생으로 부모의 체감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상한선이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보다 높다. 특별활동, 현장학습비 등 추

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유치원은 교육비 자체가 자율화되어 있어서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원아 1인당 교육비 총액은 국공립유치원 평균 63만 9,000원, 사립유치원 평균 53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6] 인건비 자체도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도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매우 많은 격차가 나게 된다.

다. 보육 서비스의 질

운영 주체와 시설비 투자의 차이, 운영비 확보의 차이는 결국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차이로 연결된다.

〈표 2-9〉는 어린이집이 2013년 3월부터 1년간 월평균 반당 기본급을 시설 유형별, 규모별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 2-9〉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평균 지출: 기본급

(단위: 천 원(개), %)

구분	국공립			민간가정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16-20명	2,491.6	621.7	(45)	1,373.9	295.4	(9,774)	55.1
46-54명	2,780.4	922.1	(199)	1,794.9	440.7	(935)	64.6
73-81명	2,611.4	275.0	(261)	1,843.0	395.1	(614)	70.6
93-101명	2,558.3	254.4	(105)	1,875.3	416.9	(317)	73.3
120-128명	2,579.3	261.8	(34)	1,893.9	453.8	(156)	73.4
138-146명	2,528.8	326.1	(19)	1,914.6	413.1	(84)	75.7
165명-	2,483.7	2610	(29)	1,854.2	397.3	(231)	74.7

** p 〈 .01, *** p 〈 .001
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 자료.
자료: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2014).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6) 교육부 보도자료(2014. 3. 28.). '유치원 2014년 2월 정기 정보 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

이 비용은 보육교사 이외에 원장 등 주요 인력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집 규모별 차이는 유형별 차이처럼 크지 않다. 민간과 가정의 20인 이하 어린이집이 130만~140만 원 수준으로 다소 낮게 산출되었고, 이 외에는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민간어린이집은 규모별로 반당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서도 인증유지율이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90% 이상인 데 비하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80% 미만이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미신청 어린이집도 있고 인증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증 취소 사례가 빈번하여 인증유지율이 떨어진다(표 2-10 참조). 또한 인증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시설 유형별로 점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표 2-10〉 설립 유형별 인증률: 2016년 2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민간
시설 수(A)	42,517	2,629	1,414	785	22,074	155	15,460
인증 유지 시설 수(B)	33,569	2,510	1,292	525	17,106	63	12,073
(인증유지율(B/A))	(79.0)	(95.5)	(91.4)	(66.9)	(77.5)	(40.6)	(78.0)

주: 법인단체는 민간에 포함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2016 평가인증 관련 통계. https://www.kcpi.or.kr/에서 2016. 3. 31. 인출.

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달 체계 차이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연령 이원화인 국가로 행정 체계, 집행 및 지원 체계가 모두 다르고, 관련 법률도 다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협력 체계는 취약하다.[7]

보육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제

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와 지도 감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지자체별로 부모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를 담당한다. 평가인증은 중앙정부가 실시하지만 지자체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추진한다. 유아교육은 인가, 장학은 물론 평가도 지방교육청이 담당한다.

재원은 영아보육 재정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로 확보하여 각 시·도 신청에 따라 지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관련 별표 1에 명시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급보조율 내역 중 제 89호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국고기준보조율은 2014년부터 서울 35%, 지방 65%이고, 가감 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맞는 시·도는 지원 비율을 10% 가감한다.

유아교육(어린이집 누리과정 포함) 재정은 모두 지방교육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시·도세 전입금,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은 담배소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이루어진다(서문희 등, 2014).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8]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입액 전액과 내국세 일정 비율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7) 2013년부터 정부가 유보 통합을 정책과제로 추진함. 2013년 모형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2014년 국무조정실에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1국 3과)을 설치하여 단계별로 요소별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8)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함.

금액이고,[9] 특별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일정 비율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정부 분담금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다시 분담한다. 분담 비율은 50:50이 기준이고 이 역시 가감 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맞는 시도는 지원 비율 20%를 가감한다.[10]

2. 개별 서비스

파견보육 형태의 개별 서비스는 공적으로는 아이돌보미 교육 및 파견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한국이민재단에서 방문취업비자 대상으로 외국인 육아돌보미를 교육하고 이용 희망자와 연계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11] 이 외에 민간에서 온·오프라인 베이비시터 파견 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여러 카페 등 인터넷 웹사이트상에서 아이돌봄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사업인 아이돌보미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발한 자 중 90시간의 교육 이수(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후 아이돌보미로 등록하도록 하고 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 파견하여 활동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이용시간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보육교사 자격자 아이돌보미인 보육교사형 및 아동돌봄에 가사가 추가된 종합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소득계층에 따라 가~라형으로 나누어 가~다형까지 차등 지원하고 지원시간은 시간제는 연간 480시간, 종일제는 월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7호, 2016. 5. 29. 일부 개정]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에 관한 규칙.
10) 지방재정법시행령[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68호, 2016. 6. 28. 일부 개정] 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http://www.kisf.org 참조.

120~200시간을 지원한다. 영아종일제는 당초 0세에서 출발하여 2014년에 1세로 확대되었다. 서비스 수혜 가구는 2014년 기준으로 시간제 약 5만 가구, 종일돌봄 4,300여 가구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4년에 베이비시터 양성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중단하였고, 이후에 아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시간은 40시간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 차이가 있었다.

3. 가족 지원

가족의 지원은 자녀양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점에서 조부모 지원이 대표적이다. 친인척 양육지원은 현재 매우 드물다.

조부모 지원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파악된다. 자녀가 0세아 등 어릴 경우에는 전적으로 주된 양육자 또는 양육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아이가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기관 서비스와 별개로 가족의 지원도 받아야 한다. 2014년도 조사(양미선 등, 2014)에 의하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약 35% 정도가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병행하여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 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이 친·외 조부모이고 비혈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에 의한 자녀양육지원 관련 정책은 미약하다. 조부모 양육지원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추진 정책은 없고 지방정부 특수 시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소득 하위 10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기관 미이용 영유아는 월 25만 원, 기관 이용 영

유아 및 초등학생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12]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에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가 15개월 미만일 경우에 25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조부모돌보미로 활동하는 경우에 시간당 6,000원, 월 40시간 총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간은 두 자녀 가정 중 맞벌이는 9개월, 비맞벌이는 6개월을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은 개월 제한은 없이 연령 제한만 적용한다.[13] 강남구에서도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조부모 ‘손주돌보미사업’을 시범운영하였다.[14]

이 외에도 일부 지방정부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관련 교육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도부터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내 손주학교’와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강남시니어클럽의 ‘아이케어센터’가 있고 이 외에도 서울시 관악구, 서초구, 성북구, 구로구 등에서 예비 할아버지·할머니 육아교실을 운영한다.[15] 2011년부터 삼성생명사회공헌재단이 가천대학교와 함께 실시하는 세살마을사업의 일부로 교육사업도 추진한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 사업으로 검토한 사례들이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 등에서 그 효과와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부산시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조부모 양육지원사업은 노인의 삶의 질과 역행하고 부모들의 양가 감정 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하정화, 2013) 경기도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12)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참조.
13) 서초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 참조.
14) 자녀 중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로서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일반 가정, 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 및 장애부모 가정이 지원 대상이었음.
15) 내 손주학교(http://naesonju.com/), 아이케어센터(http://www.sicare.or.kr/), 관악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자조모임(http://cafe.daum.net/gwanak0679/), 서초구 보건소 예비 할머니·할아버지 육아교실(http://www.seocho.go.kr/site/sh/main.do), 성북구 보건소 손주사랑 육아교실(https://bogunso.seongbuk.go.kr/), 구로구 보건소 예비 할아버지·할머니 육아교실(http://www.guro.go.kr/health/NR_index.do) 참조.

현실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조부모 양육 만족도는 평균 3.8점(4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선정 등, 2013). 이 외에 노인복지 관점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우울감 또는 만족도에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비교적 활발하게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전혜정 등, 2013; 조윤주, 2012; 최영, 차승연, 2013).

4. 지역사회 지원

정부가 추진한 지역사회 지원으로는 지역사회에 설치한 지원기관을 통한 부모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보 제공 이외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 94개 정도가 운영된다. 시·군·구 센터는 시·군·구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치 및 사업 활성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의 영향이 크다.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펼쳐 왔다. 가족품앗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 돌봄과 양육 및 다양한 아이템을 품앗이하자는 뜻이다. 부모들의 공통 활동 공간(장소)을 의미하는 공동나눔터는 67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자 연인원은 2015년 17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지역사회 육아지원 기능 활성화는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부터 포함되었으나 사실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이다. 지역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연계한 일상적·통합적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

의 자조·나눔 활동을 활성화하여 공적 돌봄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 효과의 전국적 확산은 미흡하다.[16)]

최근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부모지원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제주도의 ‘수눌음육아나눔터’를 들 수 있다. 비영리단체가 공간을 확보하면 도가 공간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여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에게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 나눔, 물품 나눔, 봉사 나눔, 정보 및 자원 나눔을 통해 지역 공동체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7)]

5. 양육비용 지원

양육비용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총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고, 보육은 인건비 미지원 기관 영아와 유아의 보육비용 지원도 기본보육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상교육은 정부가 정한 부모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기준액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전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설립 유형별로 지원되는 총금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현금 지원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대체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3년부터는

1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 9. 13.). “온 마을이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육아나눔터”.
17) 제주시청 보도자료(2016. 3. 28.).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공모’.
http://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966066

신청일 기준 만 5세 이하(0~84개월)의 영유아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10만~2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제도 도입 목적으로 기관 서비스 이용자와의 형평성이 우선 강조되었기 때문에[18] 보편적 아동수당과는 차이가 있고 정책적 의미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우리나라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유세하다(고제이 등, 2015). 노르웨이의 경우에 가정양육수당(Child care allowance)은 모든 아동이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하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거나 단기간 이용하고 자녀를 돌보는 가족에 대하여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한다.[19] 우리나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물론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에서의 양육수당은 취업부모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지 않거나 일을 중단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하는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제2절 선행 연구

선행 연구는 본 연구 내용과 맞추어서 미시적 분석, 거시적 분석, 미시-거시 통합 분석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아동돌봄과 출산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횡단조사나 패널

18)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p.25 참조.
19) Amounts transferred to families with children(Last updated: 2014-05-07) https://www.regjeringen.no/en/topics/families-and-children/

자료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미시적 연구로 실시되었다. 외국 연구들을 보면 양육비용의 지원이나 보육 서비스 이용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보육비용 지원이나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로는 노르웨이(Lapegard, 2010)와 독일(Haan & Wrohlich, 2009) 연구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한 자녀와 두 자녀를 둔 가구의 횡단면적 자료를 사용하였고, 후자는 혼인 또는 동거 중인 1만 845가구의 자료가 분석 대상이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개인의 보육이나 양육지원이 기대자녀 수, 추가출산 및 추가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세하나마 이들 요인이 추가출산의도나 기대자녀 수, 추가출산 등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서문희 등, 2009; 이삼식 등, 2008). 이러한 경향을 보육지원 및 이용의 보편화로 그 정도가 약화된 것으로 파악된다(서문희, 이혜민, 2014).

양육 및 보육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거시적 접근은 국가 단위 또는 국가 간 비교 연구가 많이 실시되었고 일부 연구가 동일 국가 내 지방 단위를 분석 단위로 하는 연구이다. 최근 연구로, 1982~2007 OECD 18개국 자료를 회귀분석한 Luci & Theveneon(2011)의 연구에서는 영아보육기관이용률과 출산율 간에 긍정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개별 국가 연구로는 Bauerschuster 등(2013)이 독일의 1998~2010년 지역 자료를 DID 방법으로 분석하여 3세 미만 아동의 공공보육시설이용률과 출산율과의 상관성을 증명하였다. 일본 연구로는 Hiroshi Yoshida(2006)가 일본 지방 단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OLS 및 WLS 방식의 회귀분석으로 보육시설등록률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육시설이용률이 출산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이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보고하였다. 분석 자료 해당 연도의 보육시설 이용이 31.6%

인데 보육시설이용률 증가만으로 합계출산율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에서는 거시적 접근법으로 시계열 및 시·군·구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졌다(표 2-11 참조). 서문희 등(2009)은 개인 단위 분석과 함께 시·군·구 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군·구 단위 분석에서는 시·군·구 특수사업인 출생 순위별 보육료 추가 지원, 출산지원금 및 양육수당이 출산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보육료 추가 지원은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고, 현금 지원은 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육·교육기관이용률이나 여성취업률은 모두 시·군·구 출산율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삼식, 최효진, 정혜은(2010)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활용한 개인 단위의 기대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더불어 국가 단위의 시계열적 분석과 시·군·구 단위의 거시 접근을 시도하였다. 육아서비스이용률은 합계출산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육아서비스이용률이 지역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시계열적 접근과 횡단면적 접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송헌재, 우석진, 2015)은 시·도별 보육료 예산 금액 (2001~2012), 시·도별 출산율, 출생아 수,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등을 이용하여 시·도 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료 예산이 1,000억 원 증가할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245 증가하고, 출생아 수는 1,310명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보육료 예산은 여성경제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2-11〉 국내 거시 분석 선행 연구

구분	단위	종속변수	독립변수
서문희 등 (2009)	시계열 (1995 ~ 2008)	합계출산율	GDP 대비 보육(국고) 예산 비율 0~5세아 보육시설이용률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시·군·구	합계출산율 출생아 중 출생 순위별 비율	n~n-2기 출생 순위별 수당 지원 여부 특수보육 예산(아동 1인당) 국공립시설정원율, 보육·교육기관이용률 도시화 정도, 재정자주도 가구주 중졸, 대학원 이상 비율 가구주 종교별 비율, 20~40세 여성취업률
이삼식 등 (2010)	시계열 (1990 ~ 2009)	합계출산율	보육·유아교육비이용률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수 여성(25~35세) 경제활동참여율 여성(25~29세) 평균근로시간 가임기여성 인구수, 여성 초혼연령 취업여성 중 사무직 이상 비율 일반혼인율, 여성(25~29세) 월평균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시·군·구	합계출산율	보육·유아교육비이용률 국공립보육시설 수 핵심가임여성 비율, 여성 미혼율 주택 자가 비율, 여성 재학 비율 재정자립도, 지역 구분
송헌재 등 (2015)	시·도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보육료 예산, n-1~n-3기 합계출산율 5세 미만 영유아 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조혼인율, n-1기 여성 초산 출생아 수

세 번째로 미시적 개인 단위 자료와 거시자료를 통합한 연구로 다국가 분석과 개별국가 연구가 실시되었다.

Hilgeman and Butts(2009)는 20여 개국 조사 자료에 국가 통계를 통합하여 개인 출생아 수와 미시 개인 특성, 거시 국가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영아보육시설등록률, 가족 휴직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시 보육시설등록률과 개인의 출생아 수 간의 긍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보육 서비스가 부모의 경력 단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개인의 출산 감소를 완화한다고 해석하였다.

개별 국가 연구로 스페인, 노르웨이, 독일 연구 사례를 들 수 있다. Baizan(2009)은 스페인 미시-거시자료 분석을 통하여 3세 미만 아동의 공공보육시설이용률이 개인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Rindfuss et al.(2011)은 노르웨이 1973~1998년 동안의 435개 시계열 지방자차단체 단위의 거시자료와 개인의 인구등록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지역 내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효과는 각 출산 패리티에서 나타났다. 한편, Hank & Kreyenfeld(2001)는 독일 사회경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첫 자녀 출생에 대한 시간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1984~1985년의 기간 중 첫 출산이고 독립변수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보육 관련 변수로 가족 네트워크와 지역 내 공보육이 포함되었다. 지역 내 공보육은 평균 이상과 이하로 단순화하여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공보육의 공급은 출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 네트워크로 반영한 비공식 부문의 접근성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자는 전반적 보육 서비스 부족이 여성의 출산과 취업 양립을 저해하므로 여성들이 취업 경력과 자녀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하였다.

〈표 2-12〉 보육정책의 효과성 거시, 거시-미시 분석에 대한 국외 사례

연구자(연도)	대상 국가	분석 자료	분석 방법	종속변수	정책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Luci and Theveneon (2011)	OECD 18개국	1982~2007 국가별 자료	회귀분석	tempo-adj TFR	3세 미만 영아 보육기관이용률	+
Hiroshi Yoshida (2006)	일본	지역 자료	회귀분석	함계출산율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등록률	+

연구자 (연도)	대상 국가	분석 자료	분석 방법	종속변수	정책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Bauerschuster et al.(2013)	독일	1998~2010 지역 자료	DID	조출산율	3세 미만 아동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
Hank and Kreyenfeld (2001)	독일	1984-1985 사회경제패널 자료	시간 로짓 분석	첫 자녀 출생	가족 네트워트 공보육 이용 정도	네트워크 +
Hilgeman and Butts (2009)	20개 선진국	1995-1997 World Values Survey, 1999-2000 European Values Study, OECD 자료	계층적 베이지안 모델	출생아 수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률 (공공, 민간)	+
Baizan (2009)	스페인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994-2001)	다수준분석	출산 이행	3세 미만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
Rindfuss et al.(2010)	노르웨이	조사 자료, 435개 지역 자료	이산시간 해저드모델	35세 여성 출생아 수, 추가출산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률	+

자료: 1) Luci and Thevenon(2011). The Impact of Family Policy Packag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2) Hiroshi Yoshida(2006). Lowest Low Fertility Governmemtal Action in Japan: A Comment.
3) Bauernschuster et al.(2013). Does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Increase Birth Rates_Evidence from a Low Fertility Country. Ifo working papers. no 158. Leibniz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
4) Hank and Kreyenfeld(2001).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Care in Western Germany. MPIDR Working paper WP 2001-019. July 2001.
5) Hilgemand and Butts(2009).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_A Welfare Regime Paradox.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8(1), March 2009, pp.103-117.
6) Baizan(2009). Regional Child 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Decisions in Spain. Demographic Research. Vol 21(27), pp.803-842.
7) Rindfuss R.R, David K. Guilkey, S. Philip Morgan, and Øystein KRavdal(2010). Child 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in Norway.

제 3 장 보육과 출산의 연계성

3 보육과 출산의 연관성

제3장에서는 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을 세 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시계열 및 시·군·구 지역 단위로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미시 개인 자료와 거시 시·군·구 지역 단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 거시 분석

1. 시계열 분석

국가 단위 시계열 자료는 GDP 대비 보육 예산 비율,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이용률, 여성경제활동참여율, 합계출산율로 1995~2014년의 20년간 자료이다. 본 분석에서는 이용률은 보육과 유아교육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재정 규모는 보육 관련 예산만을 포함하였다.[20)]

우리나라의 양육비용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보육비용 지원 예산 중 국고 예산만을 보면 1995년 830억 원, 2000년 1,460억 원, 2005년 6,001억 원, 2010년 2만 1,275억 원, 2014년 5만 2,7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액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0.39이다. 그러나 이 액수는 보육 예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은 매칭하고 있고,[21)]

20) 유아교육 예산은 2002년 이전의 자료, 특히 지방교육청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음.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관련 별표1에서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을 국고

이 외에도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과 유치원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22] 이러한 금액까지 모두 합하면 전체 영유아 보육·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은 11조 원 이상으로 GDP의 1%를 넘는다.

〈표 3-1〉 보육과 출산 관련 사항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명, 백억 원, %)

구분	합계출산율	보육 예산	보육 국고 GDP 비율	보육이용률	유치원이용률	여성경제 활동참여율
1995	1.63	8.30	0.02	7.01	26.09	48.4
1996	1.57	11.03	0.02	9.51	26.13	48.9
1997	1.52	13.37	0.03	12.31	26.40	49.8
1998	1.45	10.77	0.02	13.35	24.85	47.1
1999	1.41	11.18	0.02	15.76	25.12	47.6
2000	1.47	14.60	0.03	17.28	26.05	48.6
2001	1.30	17.06	0.03	19.32	26.76	49.2
2002	1.17	21.03	0.03	21.75	27.95	49.7
2003	1.18	29.99	0.04	24.50	28.51	48.9
2004	1.15	40.50	0.05	27.87	29.15	49.8
2005	1.08	60.01	0.07	31.24	30.86	50.0
2006	1.12	79.10	0.09	34.91	33.71	50.2
2007	1.25	104.62	0.12	38.84	36.03	50.1
2008	1.19	142.36	0.14	41.37	37.61	49.9
2009	1.15	170.48	0.16	42.94	39.00	50.0
2010	1.23	212.75	0.18	46.80	39.44	50.0
2011	1.24	247.84	0.20	48.56	40.55	49.6
2012	1.30	302.86	0.24	52.82	43.57	49.9
2013	1.19	414.66	0.32	53.70	47.11	50.85
2014	1.21	527.38	0.39	54.59	46.93	51.9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교육부, 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

기준보조율은 2014년부터 서울 20%에서 35%, 지방은 50%에서 65%로 개정함. 가감 조건을 두어서 조건에 맞는 시·도는 지원 비율을 10% 가감함.

22) 어린이집 유아의 누리과정비는 2012년부터 연차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여 2015년부터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

이러한 재정 투자와 더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용률도 증가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이용률은 연도와 정적인 비율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유치원이용률은 2000년 초반 이전까지는 답보 상태였으나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합계출산율은 다소의 굴곡은 있으나 2000년 이후 1.3을 넘지 못하고 있고, 여성경제활동참여율도 20여 년간 50% 전후에서 맴도는 양상이다(표 3-1 참조).

논리적으로는 보육료 지원 규모는 어린이집이용률을 높이고 이들은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에 기여하며, 또한 직간접적으로 합계출산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를 보면 보육과 출산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수년간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육재정 투자나 이용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하여 출산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표 3-2〉는 보육, 출산, 여성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회귀계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에는 영유아기 재정 투자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과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들 변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치원 이용은 정적으로 긍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어린이집 이용과 여성경제활동참여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영유아기 재정 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출산에는 유치원은 정의 방향으로, 어린이집은 부의 방향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표 3-2〉 시계열 자료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보육이용률		유치원이용률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합계출산율	
	B	β	B	β	B	β	B	β
GDP 대비 보육(국고) 예산	114.5***	.781	62.2***	.898	2.290	.232	.149	.100
보육시설이용률	-	-	-	-	.014	.201	-.026***	-2.605
유치원이용률	-	-	-	-	.050	.356	.048*	2.255
여성경제활동참여율	2.42	.163	.686	.097	-	-	-.069*	-.456
R^2	.829		.940		.776		.825	
Constant	-101.5		-7.34		47.184		3.898	

* p 〈 .05, *** p 〈 .001
주: *B*는 비표준화계수, *β*는 표준화계수를 의미함.

한편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영유아기 재정 투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서 합계출산율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간의 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유치원 이용을 통해서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그림 3-1]은 회귀분석 결과를 도형화한 것이다.

[그림 3-1] 시계열 자료 다중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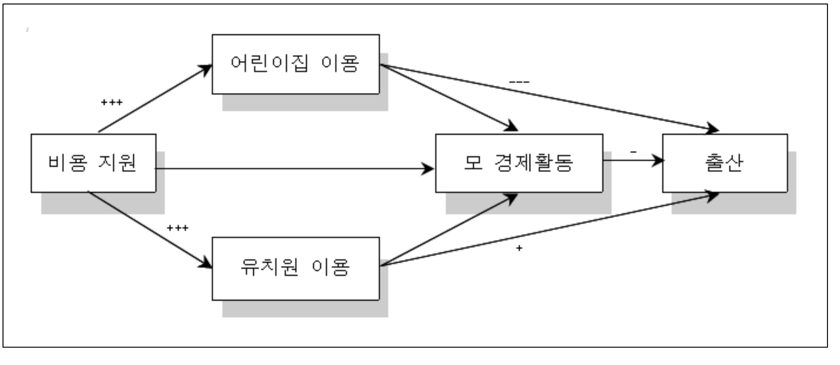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2008년 이후 연도 자료 추가로 기관 서비스 이용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의 관련 유의성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분석에서는 기관 서비스 이용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의 관련성은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서문희 등, 2009). 이삼식 등(2008)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육비 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 여부를 매개로 하여 총 출산 자녀 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서문희 등, 2011).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분석 결과는 보편적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의 확산으로 보육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직접 또는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출산력 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육 서비스 이용 이외의 차별성 있는 일하는 부모 지원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 시·군·구 단위 차이 분석

국가 전체로 보면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지원의 확대는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유치원이용률 이외에 재정 투자나 보육 서비스 이용은 출산 수준과는 부적 관계를 보이고, 여성취업률도 출산에 대하여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나 일반적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

본 고에서는 거시 분석 방법의 하나로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분석을 통해서 보육과 출산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군·구 통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산출되는 시·군·구 통계 항목도 제한적이고 시기적으로도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지역 통계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서는 수집 가능한 지역 통계를 포함하였다.

가. 지역 차이

〈표 3-3〉은 보육 서비스 공급과 유치원 이용의 시·군·구 단위 기본 통계를 나타낸다.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평균은 2008년 56%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 69%에 근접하고 있다. 최소와 최대 비율의 격차는 매우 커서 개별 지역 간의 공급 수준에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경우에 각각 38.8%, 116.3% 수준이다. 평균으로 볼 때 시·군·구 간의 격차는 2008년, 2009년에는 도의 시와 군이 유사한 수준이고 대도시의 구 지역이 다소 낮은 양상이었으나 2010년 이후 모두 각 도의 시가 가장 높고 다음이 군 지역이며 대도시의 구 지역이 가장 낮다. 각 연도 모두 지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은 전체 시·군·구 평균이 2015년 9.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08년 7%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시·군·구 차이는 전체 보육공급률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서 군 지역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구이며 도의 시 지역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설치 부담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서울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확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설치 방법도 신축보다는 법인, 단체는 물론 개인으로부터의 무상임대 형태도 수용하고 있다.[23]

23)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본 방향으로 기부채납, 민·관 연대 등 비용 절감형 추진으로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설과 전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 부문과의 상생 추진을 포함함(서울특별시,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표 3-3〉 시·군·구 단위 보육공급률 및 교육이용률 평균

(단위: %, 개)

구분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수)
	전체	구	시	군				
보육공급률								
2015	68.6	62.0	73.2	69.8	38.8	116.3	13.3	(228)
2014	68.5	61.6	74.0	69.1	36.7	112.3	13.2	(228)
2013	67.0	60.0	72.9	67.2	36.8	107.7	13.3	(229)
2012	64.0	57.3	69.5	64.6	36.0	103.8	13.2	(229)
2011	61.8	55.1	66.3	63.2	33.1	100.0	13.7	(229)
2010	61.1	54.5	64.3	63.4	31.6	98.5	14.1	(229)
2009	58.6	52.2	61.5	61.2	24.6	96.8	13.9	(231)
2008	55.9	50.3	57.7	58.7	21.9	117.7	13.8	(231)
국공립시설공급률								
2015	9.5	10.0	6.4	11.9	0.0	44.4	7.8	(228)
2014	9.1	9.5	6.2	11.5	0.0	43.6	7.6	(228)
2013	8.6	8.8	5.9	10.9	0.0	42.5	7.2	(229)
2012	8.1	8.2	5.7	10.1	0.0	41.3	6.8	(229)
2011	7.8	8.0	5.5	9.8	0.0	40.9	6.7	(229)
2010	7.7	8.1	5.4	9.5	0.0	41.7	6.7	(229)
2009	7.3	7.8	5.1	8.8	0.0	36.5	6.4	(231)
2008	6.9	7.6	4.9	8.2	0.0	32.1	6.1	(231)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								
2015	22.3	17.2	15.9	32.2	4.2	84.2	15.1	(228)
2014	21.6	16.4	15.4	31.4	4.1	80.6	14.7	(228)
2013	20.7	15.5	15.0	30.1	3.9	77.6	14.1	(229)
2012	19.8	14.4	14.4	29.1	2.9	73.2	13.6	(229)
2011	19.5	14.1	14.3	28.6	3.1	68.5	13.3	(229)
2010	19.5	14.3	14.3	28.4	3.1	74.4	13.4	(229)
2009	18.8	13.7	13.9	27.6	0.0	71.8	13.1	(231)
2008	17.3	12.1	12.7	26.0	0.0	70.5	12.7	(231)
유치원이용률								
2015	44.9	47.3	46.7	41.4	20.6	70.5	10.5	(227)
2014	44.4	47.1	45.6	41.1	19.2	71.8	10.9	(227)
2013	45.0	48.0	46.4	41.4	15.7	76.2	11.2	(228)
2012	42.0	44.1	43.2	39.1	14.1	66.9	10.2	(228)
2011	39.2	40.4	40.2	37.5	14.0	67.7	9.8	(229)
2010	38.7	39.8	39.0	37.7	14.8	66.8	9.6	(229)
2009	39.7	40.6	40.0	38.9	7.6	71.0	10.1	(229)
2008	38.7	39.7	38.8	38.0	7.7	81.9	10.1	(229)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이라는 관점에서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비율도 제시하였다. 이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직장 어린이집이 포함되었다.[24) 이 비율은 전체 시·군·구 평균은 22% 정도로 2008년 17%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역적으로는 군 지역이 월등하게 높다. 법인어린이집 대부분 군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치원은 정원 통계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원아 수를 기준으로 3~5세 인구수 대비 비율을 산정하였다. 전체 시·군·구 평균은 2015년에 45% 수준인데, 2008년에는 지역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점차 대도시의 구와 도의 시 중심으로 유치원 설치가 확대되면서 군 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지역 차이는 2012년부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시·군·구 단위 합계출산율 평균

(단위: 명, 개)

구분	지역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수)
	전체	구	시	군				
2014	1.31	1.10	1.35	1.46	0.79	2.43	0.27	(225)
2013	1.29	1.07	1.33	1.43	0.73	2.35	0.26	(226)
2012	1.41	1.16	1.46	1.57	0.89	2.47	0.28	(227)
2011	1.36	1.11	1.40	1.52	0.85	2.28	0.27	(228)
2010	1.34	1.09	1.38	1.50	0.78	2.41	0.27	(228)
2009	1.26	1.01	1.30	1.42	0.73	2.06	0.25	(231)
2008	1.29	1.06	1.34	1.42	0.79	2.21	0.24	(231)
2007	1.36	1.11	1.39	1.52	0.84	2.33	0.3	(231)

〈표 3-4〉는 시·군·구 합계출산율을 나타낸다.[25) 2014년 기준으로 시·군·구 평균은 1.31인데 최소 0.79부터 최대 2.43까지 분포한다. 지역적

24) 서울형과 공공형어린이집은 인건비지원어린이집에 포함하지 않았음.
25) 시·군·구 합계출산율 평균은 국가 합계출산율과는 다른 개념임.

으로는 군 지역이 가장 높고 다음이 각 도의 시이며 대도시의 구 지역이 가장 낮다. 2014년의 경우에 각각 1.46, 1.35, 1.10으로 나타났다.

나. 보육공급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성

1) 상관관계 분석

이상과 같이 보육 공급은 전체는 도의 시, 국공립은 대도시의 구, 지원시설은 각 도의 군 지역이 가장 높고, 유치원은 도의 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한편 합계출산율은 군, 시, 구의 순으로 높다. 이러한 기초적 자료로 보아서 군 지역에 합계출산율과 지원어린이집 정원율이 각각 타 지역보다 높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비율은 약간 높으며 이외 전체 보육 공급과 유아교육이용률은 군 이외 지역에서 더 높다. 즉 지역 보육 공급 관련 통계와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낮아 보인다.

통계 분석으로 출산과 보육·교육 서비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연도 시·군·구 합계출산율과 전년도 보육 공급과 유치원이용률 및 전년도와 당해 연도 보육 공급와 유치원이용률 간의 차이와 지역 합계출산율 간의 단순 상관성 분석 결과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연도 모두 보육공급률과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이 합계출산율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유치원이용률 증가가 부분적으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이 외는 모두 부의 관계를 보였다. 합계출산율과 정의 관계를 나타낸 보육공급률과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의 유의성은 전자는 2013년 후자는 2014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표 3-5〉 합계출산율과 n-1 보육·교육공급률 및 변화와의 단순상관계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보육공급률	.136*	.151*	.137*	.134*	.098	.047	(231)
국공립시설공급률	-.226**	-.201**	-.196**	-.179**	-.160*	-.150*	(231)
지원시설공급률	.216**	.189**	.166*	.192**	.144*	.113	(231)
유치원이용률	-.097	-.145*	-.126	-.125	-.143*	-.168*	(228)
보육공급률 변화	-.052	-.191**	-.015	-.223**	-.193**	-.105	(228)
국공립시설공급률 변화	-.055	-.078	.093	-.009	-.120	-.209**	(227)
지원시설공급률 변화	-.093	-.244**	-.038	-.182**	-.217**	-.117	(226)
유치원이용률 변화	.024	.021	-.102	-.136*	-.145*	.013	(225)

* $p < .05$, ** $p < .01$, *** $p < .001$

〈표 3-6〉 초혼연령 통제 시 합계출산율과 n-1 보육·교육공급률 및 변화와의 단순상관계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보육공급률	-.128	-.068	-.156*	-.103	-.110	-.189**	(231)
국공립시설공급률	-.115	-.117	-.104	-.162*	-.143*	-.054	(231)
지원시설공급률	-.043	-.018	-.009	.011	-.084	-.037	(231)
유치원이용률	-.177**	-.229***	-.194**	-.162*	-.111	-.189**	(228)
보육공급률 변화	-.031	-.280*	.010	-.129	-.210**	-.128	(228)
국공립시설공급률 변화	-.054	-.118	-.017	.008	-.138*	-.071	(227)
지원시설공급률 변화	-001	-.231***	-.088	-.166*	-.227***	-.123	(226)
유치원이용률 변화	.080	.117	-.083	-.034	-.067	.129	(225)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3-6〉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초혼연령을 통제변수로 사용한 결과이다. 초혼연령은 혼인율과 더불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구학적 변수이므로 이를 통제한 것인데, 결과를 보면 단순 상관분석에 정의 관계를 보였던 보육공급률과 지원시설공급률의 합계출산율과의 관련성이 부의 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초혼연령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서 낮다. 즉, 영유아 보육·교육공급률이 저출산 대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보다는 결혼 연령 등 타 요인들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잠재성장곡선모형 분석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변수를 이용한 잠재성장곡선모델링(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GC)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자료의 특성상 잠재성장곡선모델링을 통하여 변인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변량 잠재성장곡선모델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간명도를 고려하는 증분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활용하였다.[26] 분석 도구는 SPSS 22.0과 Amos 24.0을 사용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를 근거로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은 두 가지이다. 모형1의 경우, 종속변수는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4개 연도 합계출산율, 관측변수인 독립변수는 보육공급률,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 유치원이용률을 설정하였다. 모형2는 독립변수를 보육·유아교육 관련 변수 이외에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초혼연령, 시·군·구, 복지비, 재정자주도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그림 3-2 참조). 독립변수는 시·군·구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4개 연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잠재성장곡선모델링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3-7〉에 제시하였다.

26) 적합도 지수의 평가는 CFI가 0.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05 이하이면 우수한 모형, 0.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0.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함(우종필, 2012).

〔그림 3-2〕 연구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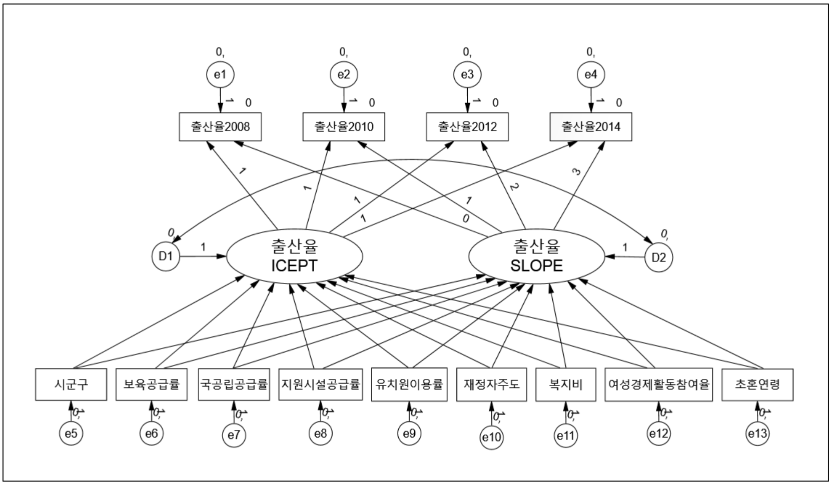

〈표 3-7〉 주요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명, 점, %, 세, 개)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출산율_2008	1.29	0.24	0.79	2.21	(232)
출산율_2010	1.34	0.27	0.78	2.41	(232)
출산율_2012	1.41	0.28	0.89	2.47	(232)
출산율_2014	1.31	0.26	0.83	2.43	(232)
시·군·구	2.07	0.82	1.00	3.00	(228)
보육공급률	62.27	12.74	33.42	97.93	(232)
국공립공급률	7.88	6.49	0.00	39.71	(232)
지원시설공급률	19.42	13.07	2.78	68.65	(232)
유치원이용률	41.02	9.52	14.28	66.96	(232)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1.51	6.17	40.74	69.18	(232)
초혼연령	29.02	0.58	27.74	30.57	(232)
복지비 비중	26.46	13.05	5.41	58.96	(232)
재정자주도	62.45	10.18	32.63	89.78	(232)

주: 결측치는 평균대체법을 사용함.

〈표 3-8〉은 4개 연도 출산율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것이다. 합계출산율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유치원이용률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보육공급률과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통제변수로 복지비와 초혼연령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재정자주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출산율2008	1											
2.출산율2010	.894***	1										
3.출산율2012	.864***	.906***	1									
4.출산율2014	.783***	.825***	.933***	1								
5.보육공급률	0.108	.133*	0.126	.149*	1							
6.국공립공급률	-.176**	-.160*	-.154*	-0.121	-0.109	1						
7.지원시설공급률	.147*	.175**	.207**	.188**	.365***	.362***	1					
8.유치원이용률	-0.092	-.184**	-.130*	-.130*	-.313***	-.145*	-.264***	1				
9.여성경활률	.265***	.231***	.273***	.251***	0.052	.241***	.545***	-.215**	1			
10.초혼연령	-.692**	-.683***	-.696***	-.663***	-.379***	.170**	-.319***	0.025	-.335***			
11.복지비 비중	-.592**	-.574***	-.569***	-.538***	-.221**	-.211**	-.471***	.201**	-.477***	.606***	1	
12.재정자주도	.232***	.199**	.161*	0.12	-0.019	.183**	0.026	-.269***	-0.009	-0.008	-.578***	1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출산율 변화를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은 선형변화모델로 설정하였다.[27] 출산율의 선형변화모델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9〉와 같다. 출산율의 초기치 평균은 1.317, 변화율 평균은 0.015로 초기치와 변화율 평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출산

27) 출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무변화모델과 시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선형변화모델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선형변화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무변화모델보다 더 높게 나타나 최종 분석모형으로 선택함.

율이 2년 사이에 0.01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치의 분산과 변화율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공분산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출산율은 시·군·구 간에 차이가 있으나, 변화율은 시·군·구 간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3-10〉은 실제 출산율과 관측변수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았을 때 잠재 출산율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시·군·구 평균 출산율은 2008년 1.29에서 2012년 1.41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1.31로 감소하였으나, 모형1과 모형2 모두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은 잠재적인 출산율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 정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9〉 출산율의 초기치와 변화율

초기치(ICEPT)		변화율(SLOPE)		초기치와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1.317***	0.06***	0.015***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3-10〉 시·군·구 단위 출산율 변화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실제 출산율	1.29	1.34	1.41	1.31
모형1 추정 잠재 출산율	1.306	1.331	1.355	1.380
모형2 추정 잠재 출산율	1.305	1.329	1.353	1.378

〈표 3-11〉은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모델 적합도 지수를 나타낸다. 연구모형에 비하여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CFI, RMSEA 지수로 알 수 있듯이 적합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형2의 수정모델 CFI 지수가 0.9에 근접하는 수준이므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표 3-11 참조).[28]

〈표 3-11〉 모델 적합도 지수

구분		X^2	df	p	NFI	CFI	RMSEA
모형1	연구모형	445.875	19	.000	.688	.695	.312
	수정모형	364.555	17	.000	.745	.752	.297
모형2	연구모형	1451.174	59	.000	.453	.457	.320
	수정모형	339.825	23	.000	.872	.876	.244

〈표 3-12〉 잠재성장곡선 간의 경로계수

구분	초기치(ICEPT)				변화율(SLOPE)			
	β	*B*	S.E.	C.R	*β*	*B*	S.E.	C.R
모형1								
보육공급률	-0.045	-0.001	0.001	-0.622	0.048	0	0	0.411
국공립공급률	-0.299	-0.011	0.003	-4.121***	0.006	0	0.001	0.053
지원시설공급률	0.259	0.005	0.001	3.266	0.154	0	0	1.213
유치원이용률	-0.116	-0.003	0.002	-1.781	-0.062	0	0	-0.593
모형2								
보육공급률	-0.228	-0.004	0.001	-4.243***	-0.051	0	0	-0.415
국공립공급률	-0.169	-0.006	0.002	-3.304***	0.068	0	0.001	0.574
지원시설공급률	-0.07	-0.001	0.001	-1.121	0.079	0	0	0.548
유치원이용률	-0.154	-0.004	0.001	-3.093**	-0.208	-0.001	0	-1.81
시·군·구	0.163	0.047	0.029	1.637	-0.358	-0.016	0.01	-1.56
재정자주도	0.047	0.001	0.002	0.632	-0.495	-0.002	0.001	-2.864**
복지비	-0.212	-0.004	0.002	-1.618	-0.595	-0.002	0.001	-1.975
여성경제활동참여율	-0.055	-0.002	0.002	-0.913	-0.166	-0.001	0.001	-1.196
초혼연령	-0.578	-0.235	0.029	-7.975***	-0.106	-0.007	0.011	-0.633

* p 〈 .05, ** p 〈 .01, *** p 〈 .001

28) 모델 적합도 지수 중 CFI는 모델의 복잡성에 대해 덜 민감하고,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우종필, 2012, pp.367-268). CFI는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함.

보육공급률,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지원시설공급률, 유치원이용률 등 관측변수가 출산율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요인은 합계출산율 변화율과 아무런 정적 관련성도 보이지 않았다. 모형 Ⅱ 분석에서 유치원이용률은 변화율과도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표 3-12, 그림 3-3 참조).

초기치에 대해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요인 4개만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이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고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유치원이용률은 부적 경향을 보였다. 기타 지역변수가 포함된 모형 Ⅱ 분석에서는 보육공급률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유치원이용률, 초혼연령 모두 초기치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림 3-3〕 수정모형 1 잠재성장곡선 간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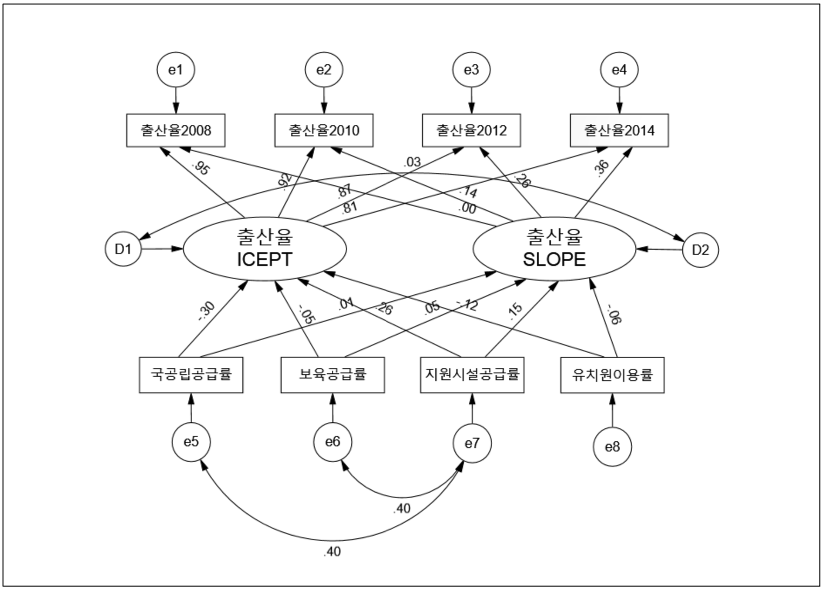

〔그림 3-4〕 수정모형 2 잠재성장곡선 간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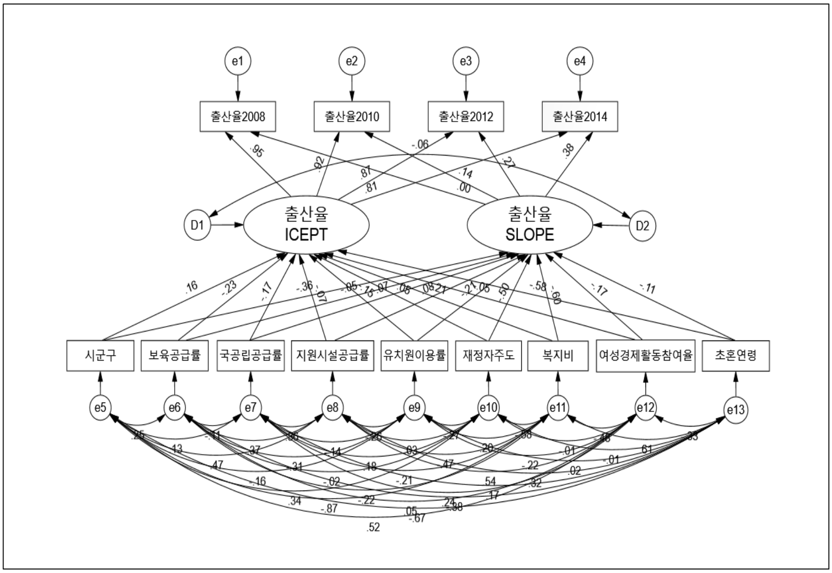

즉, 보육공급률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은 각 연도 출산율에 모두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유치원이용률은 각 연도의 출산율과 시간 경과에 따른 출산율 변화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 변수 중에서는 초혼연령이 초기치에, 복지비 비중과 재정자주도는 시간 경과에 따른 출산율 변화에만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그림 3-4 참조).

다.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시·군·구 단위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 공급이나 이용의 증가와 합계출산율 변화가 정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함을 나타낸다. 분석 모형 적합도도 낮았다.

시·군·구 지역 단위 통계분석 결과는 초기치만을 보면 경향성은 시계열

분석 결과와도 유사하다. 즉, 시·군·구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이 합계출산율과 유의한 단순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통제변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육과 유아교육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설정할 경우에 초기치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지원시설공급률이었고 국공립시설공급률이나 유치원 이용은 부의 방향으로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나 초혼연령 등 인구 및 사회경제적 지역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할 경우에 보육공급률, 국공립시설공급률 및 유치원이용률 모두 초기치에 부의 방향으로 관련성을 보였다.

시계열 분석 결과와 통계분석 결과 모두 보육이나 유아교육정책이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 등 실보육 수요와 보다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제2절 미시 개인 단위 분석

1. 분석모형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으로서의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사 시 보기 중의 하나인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과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나 질 높은 시설 공급에 대한 기대는 2015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조사 시점마다 조사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특히 2015년에 유난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3〉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1순위)

(단위: %)

구분	2009			2012			2015		
	무	유	전체	무	유	전체	무	유	전체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7.6	12.5	8.5	8.0	13.4	9.3	8.9	20.3	13.4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20.0	29.0	21.7	22.0	33.0	24.5	13.9	20.8	16.7
공교육 강화	12.9	10.0	12.4	9.4	6.3	8.7	9.5	6.4	8.3
사교육비 경감	21.1	21.5	21.2	18.6	16.4	18.1	18.7	15.4	17.4
양성평등 구현	2.7	1.3	2.4	2.4	1.5	2.2	2.8	1.7	2.3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10.6	5.5	9.7	5.7	4.0	5.3	8.9	5.3	7.4
경기활성화(고용안정)	12.4	8.1	11.6	13.9	7.1	12.3	9.0	5.2	7.5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2.0	2.7	2.2	2.8	3.0	2.9	1.4	2.0	1.6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1.0	0.4	0.9	1.5	1.2	1.4	0.6	0.8	0.7
복지 수준의 향상	5.1	5.9	5.2	10.2	9.4	10.0	4.2	5.8	4.8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4.4	3.2	4.2	5.3	4.6	5.2	6.3	4.6	5.6
교육체계 개편(선취업 후교육)	-	-	-	-	-	-	6.7	4.6	5.9
노동시장 활성화(학벌 등 타파)	-	-	-	-	-	-	7.0	4.7	6.1
주택시장 안정	-	-	-	-	-	-	2.2	2.3	2.2
기타	0.1	0.1	0.1	0.1	0.1	0.1	0.1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육과 출산과의 연계성 분석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정부지원 여부 및 기관이용시간, 혈연양육시간, 비혈연양육시간 등 서비스 이용 변인이 직접 또는 지원정책만족도를 매개로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기본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는 서비스 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림 3-5〕 통제변수 미포함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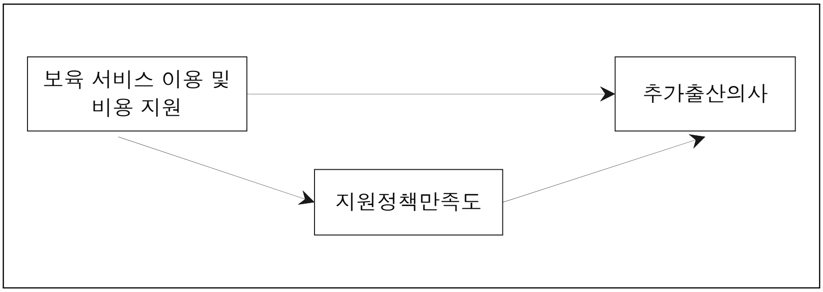

〔그림 3-6〕 통제변수 포함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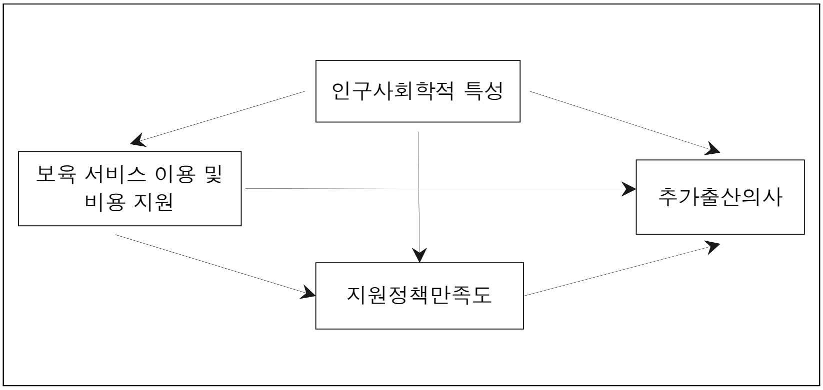

분석은 통제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형과 지원정책만족도와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및 모, 가구 특성 등의 배경변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2009년, 2012년 두 연도 조사 자료이므로 조사 시기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3-5]와 [그림 3-6]은 기본 개념모형이고 [그림 3-7], [그림 3-8]은 구조방정식모델에 따라 구체화한 연구모형이다.

〔그림 3-7〕 구조방정식모델에 따른 연구모형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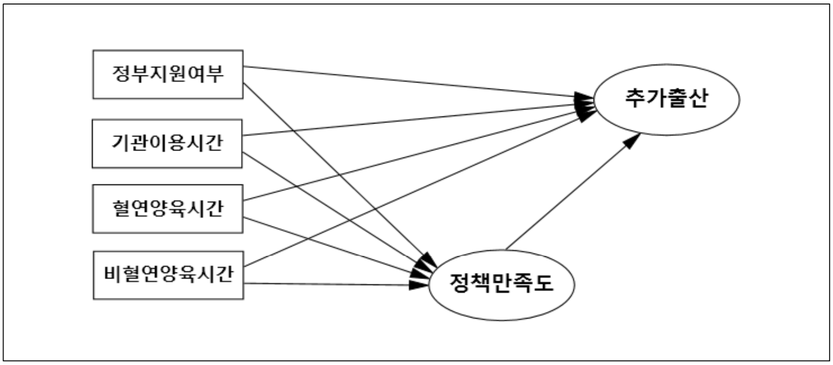

〔그림 3-8〕 구조방정식모델에 따른 연구모형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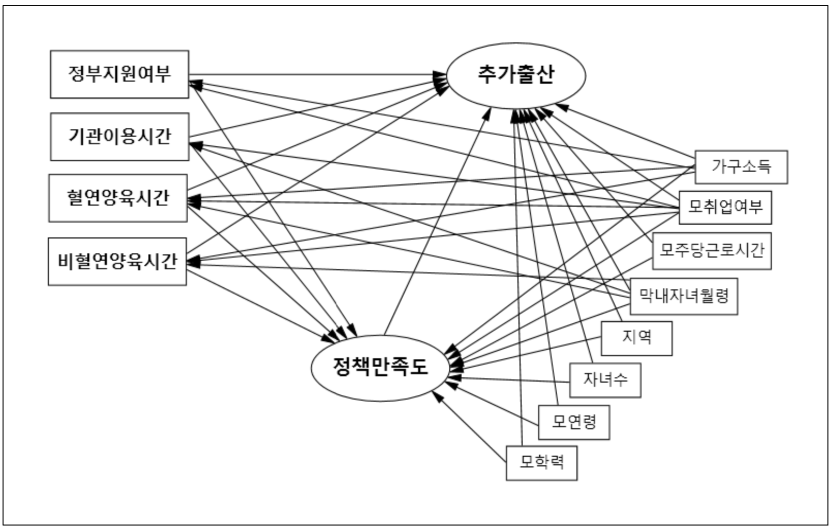

2. 경로분석 방법

경로분석은 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이 추가자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음은 자녀를 한 자녀와 두 자녀로 구분하여 한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이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두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이 셋째 자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로분석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과 포함되지 않은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조절변수인 조사 연도(2009년, 2012년)에 따른 측정동일성[29]을 검증한 결과, 각 분석 대상에서 통제변수 포함 및 미포함 모형 모두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과 자유모델(free model, unconstrained model) 간의 $\chi 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조절변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모든 분석을 2009년과 2012년 연구모형을 각각 나누어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인 2009년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30] 자료는 조사 연도인 2009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의 보육지원정책에 차이가 있었다. 2009년 조사 당시에는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 소득 50% 초과~ 60%까지는 기준 단가의 60%, 하위 소득 60% 초과~70%까지는 기준 단가의 30%를 지원하였다. 2012년 상반기에는 만 5세와 영아는 무상보육이 시행되었고, 유아는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교육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 30%는 지원에서 제외된 시점이었다(서문희 등, 2014). 연도변수가 조절변수로서 효과가 없는 것은 이러한 보육 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29)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델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분석임.
30) 조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문희 등(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및 서문희 등(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참조.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RMSEA가 비교적 높아서 양호한 수준은 아니지만, CFI가 양호한 수준이다.[31] RMSEA는 모형 1보다는 지역, 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모 특성(연령, 학력, 취업 등), 가구소득 등 배경변인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연구모형Ⅱ에서 다소 낮아졌으나 적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있다는 한계가 있다. CFI 지수 등이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모 연령, 모 학력 등 일부 통제변수와 정부지원 여부나 서비스 이용 변인과 공분산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표 3-14 참조).

〈표 3-14〉 연구모델 모형적합도

분석 대상	Model		CMIN	df	GFI	CFI	TLI	RMSEA
전체	모형Ⅰ	2009년	.000	0	1.000	1.000	1.000	.215
		2012년	.000	0	1.000	1.000	1.000	.262
	모형Ⅱ	2009년	715.709	20	.962	.906	.635	.117
		2012년	855.777	20	.956	.893	.583	.129
한 자녀 가구	모형Ⅰ	2009년	.000	0	1.000	1.000	1.000	.214
		2012년	.000	0	1.000	1.000	1.000	.281
	모형Ⅱ	2009년	275.034	16	.961	.910	.627	.127
		2012년	367.384	16	.951	.888	.538	.147
두 자녀 가구	모형Ⅰ	2009년	.000	0	1.000	1.000	1.000	.202
		2012년	.000	0	1.000	1.000	1.000	.299
	모형Ⅱ	2009년	286.831	16	.965	.907	.614	.117
		2012년	326.423	16	.961	.894	.561	.127

주: 모형적합도는 조사자가 수집한 데이터와 모델 간의 일치도를 의미함.

31) CFI는 모델의 복잡성에 대해 덜 민감하고, 표본 크기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우종필, 2012, pp.367-268).

〈표 3-15〉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 전체

구분	1	2	3	4	5	6	7
2009년 전체							
1. 지역	1						
2. 자녀 수	-.063**	1					
3. 막내 자녀 월령	-.002	.093***	1				
4. 모 연령	.023	.189***	.417***	1			
5. 모 학력	.111***	-.081***	-.071***	.050*	1		
6. 모 취업 여부	.023	-.043*	.172***	.106***	.135***	1	
7. 가구소득	.073***	.013	.065***	.121***	.435***	.331***	1
2012년 전체							
1. 지역	1						
2. 자녀 수	-.111***	1					
3. 막내 자녀 월령	-.003	.128***	1				
4. 모 연령	.037	.299***	.443***	1			
5. 모 학력	.071***	-.122***	-.070***	.047*	1		
6. 모 취업 여부	-.006	-.022	.136***	.035	.124***	1	
7. 가구소득	.015	.022	.108***	.162***	.411***	.351***	1

* $p < .05$, ** $p < .01$, *** $p < .001$

각 모형 Ⅱ에서 포함된 통제변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0.5 이하로 나타나서 판별 타당성에 문제없다고 판단된다(표 3-15 참조).[32]

경로분석은 정부지원 여부와 기관이용시간, 혈연양육시간, 비혈연양육시간 등 서비스 이용변인인 독립변수가 추가출산의사에 직접 또는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경로계수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을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33]을 사용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32) 한 자녀 가구 및 두 자녀 가구 대상 경로분석에서도 통제변수 간의 상관성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관계수와 별 차이 없이 모두 0.5 이하로 나타나서 표 제시를 생략함.

33)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모수추정치의 표본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임의표본(random sample)을 모집단으로 대체로 취급하여 정해진 수만큼 재표본추출(resampling)을 하여 표본 부트스트랩 추정치와 표본오차를 얻는 방법임(우종필, 2012).

3. 경로분석 결과

가. 전체 가구 대상 분석 결과

연도별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통제변수가 없는 모형 Ⅰ과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 Ⅱ를 구분하여 실시한 경로분석계수는 〈표 3-16〉이고, 〈표 3-17〉은 직접효과 이외에 정책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1) 모형 Ⅰ

통제변수가 없는 모형 Ⅰ에서 두 표를 보면 추가출산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09년 모형에서는 혈연양육시간과 기관이용시간인데, 혈연양육시간의 β값이 0.037로 정적 관계인 반면에 유의성은 10% 수준이어서 영향력이 미약하고, 기관이용시간은 β값이 -0.202로 부적 관계를 보여서 사실상 출산의사에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2년 모형에서도 혈연양육시간과 기관이용시간의 β값이 각각 -0.16, 0.046으로 2009년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이외에 비혈연양육시간의 β값이 -0.036으로 부의 방향으로 유의도 10% 수준에서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두 연도 모두 정책만족도가 추가출산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서비스 이용이 정책만족도를 통해 추가출산에 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3-16〉을 보면 2009년 모형의 경우, 정부지원 여부는 정책만족도를 통해 정의 방향으로 1.4%의 영향을 미치나, 기관이용시간은 부의 방향으로 0.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자료에서는 혈연양육시간이 정책만족도를 통해 0.3%의 부적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전체

경로	모형 I			모형 II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t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t
2009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374***	0.716	15.458***	0.288***	0.565	0.046***
기관이용시간	-0.126***	-0.028	-5.171***	-0.067*	-0.017	0.007*
혈연양육시간	0.017	0.004	0.876	0.031	0.008	0.006
비혈연양육시간	-0.022	-0.018	-1.153	-0.009	-0.007	0.016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015	-0.015	-0.596	0.014	0.013	0.021
기관이용시간	-0.202***	-0.023	-8.066***	-0.04	-0.005	0.003
혈연양육시간	0.037#	0.005	1.892#	0.027	0.004	0.003
비혈연양육시간	0.003	0.001	0.141	0.023	0.009	0.007
정책만족도	0.039#	0.019	1.905#	0.022	0.011	0.009
2012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007	0.015	0.2	0.009	0.02	0.28
기관이용시간	-0.036	-0.011	-1.108	0.101**	0.035	2.841**
혈연양육시간	-0.041	-0.019	-2.012*	0	0	0.008
비혈연양육시간	-0.001	-0.002	-0.069	-0.035	-0.016	-1.597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047	0.04	1.465	0.021	0.018	0.813
기관이용시간	-0.16***	-0.018	-4.976***	0.03	0.004	0.983
혈연양육시간	0.046*	0.008	2.322*	0.016	0.003	0.832
비혈연양육시간	-0.036#	-0.016	-1.846#	-0.031#	-0.014	-1.785#
정책만족도	0.072***	0.026	3.634***	0.04*	0.014	2.307*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결론적으로 2009년과 2012년 모형 모두에서 유의성은 10% 수준이지만 혈연양육시간이 길면 추가출산의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관이용시간이 길수록 추가출산의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에는 이 외에 비혈연양육지원시간도 유의도는 10% 수준이지만 추가출산의사에 직접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직접, 간접 및 총효과: 전체

구분	모형I			모형II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2009						
정부지원 여부	-0.015	0.014 #	-0.001	0.014	0.006	0.02
기관이용시간	-0.202 **	-0.005 *	-0.207 **	-0.04 *	-0.001	-0.042
혈연양육시간	0.037 #	0.001	0.038 #	0.027	0.001	0.028
비혈연양육시간	0.003	-0.001	0.002	0.023	0	0.023
정책만족도	0.039 #	0	0.039 #	0.022	0	0.022
지역				-0.036 **	-0.001	-0.037 *
자녀 수				-0.389	0	-0.389 **
막내 자녀 월령				-0.103	-0.027 #	-0.13 **
모 연령				-0.205	-0.001	-0.205 **
모 학력				0.038	-0.001	0.037 #
모 취업 여부				-0.047 *	0.008	-0.039 *
가구소득				-0.015	-0.005	-0.02
2012						
정부지원 여부	0.047	0	0.047	0.021	0	0.022
기관이용시간	-0.16 **	-0.003	-0.163 **	0.03	0.004 *	0.034
혈연양육시간	0.046 #	-0.003 *	0.043 #	0.016	-0.001	0.015
비혈연양육시간	-0.036 #	0	-0.037 #	-0.031	0	-0.031
정책만족도	0.072 **	0	0.072 **	0.04 *	0	0.04 *
지역				0.003	-0.002 *	0.001
자녀 수				-0.401 **	0	-0.4 **
막내 자녀 월령				-0.131 **	0.004	-0.127 **
모 연령				-0.16 **	-0.001	-0.161 **
모 학력				0.025	0	0.025
모 취업 여부				-0.046 *	0.015	-0.031 #
가구소득				-0.002	0	-0.003

p 〈 .10, * p 〈 .05, ** p 〈 .01

2) 모형 II

아동, 가구 및 모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경로분석에서는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 변수의 영향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직접효과를 보면 2009년 모형에서 기관이용시간만이 β값이 -0.04로 부의 관계에서 추가출산의사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2012년 모형에서는 어떠한 서비스 이용시간도 추가출산의사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2009년 모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6〉을 보면 정부지원 여부 변인의 경우 정책만족도에 대한 β값이 -0.059로 유의하였으나 정책만족도와 추가출산의사와의 관련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2012년 모형에서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독립변인 중 기관이용시간 β값이 0.004로 정책만족도를 매개로 출산의사에 간접적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 Ⅱ와 통제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 Ⅰ과 비교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통제변인의 투입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이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총효과에서 유의성을 보였던 독립변인들의 영향이 모두 사라졌다. 다만 기관이용시간은 2009년 자료 분석에서는 부적 직접효과는 유의성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2년 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통제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기관이용시간은 통제변수를 투입하자 정적 관계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영향력이 높아졌다. 추가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정책만족도의 경우 영향력은 낮아졌지만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 주목할 변인은 모의 취업이다. 모의 취업은 추가출산의사와 부적 관계를 갖는다. 일·가정 양립으로 여성취업률과 출산 수준이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외국 국가 단위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부표 1〉을 보면 모의 취업과 정부지원, 기관, 혈연, 비혈연 서비스 이용은 정적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정책만족도는 2009년에는 정의 관계이나 2012년에는 부의 관계였다. 2012년에는 영아 무상보육으로 이용시간은 길어졌으나 무차별적인 정책이 취업모 역차별로 비용 지원 정책만족도를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

책만족도와 추가출산의사와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다소나마 있었던 간접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9〕 통제변수 미포함 연구모형: 2012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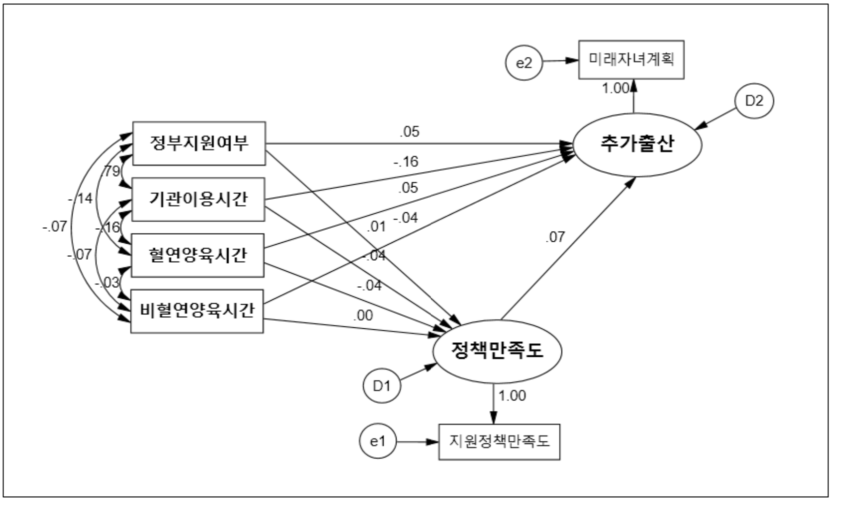

〔그림 3-10〕 통제변수 포함 연구모형: 2012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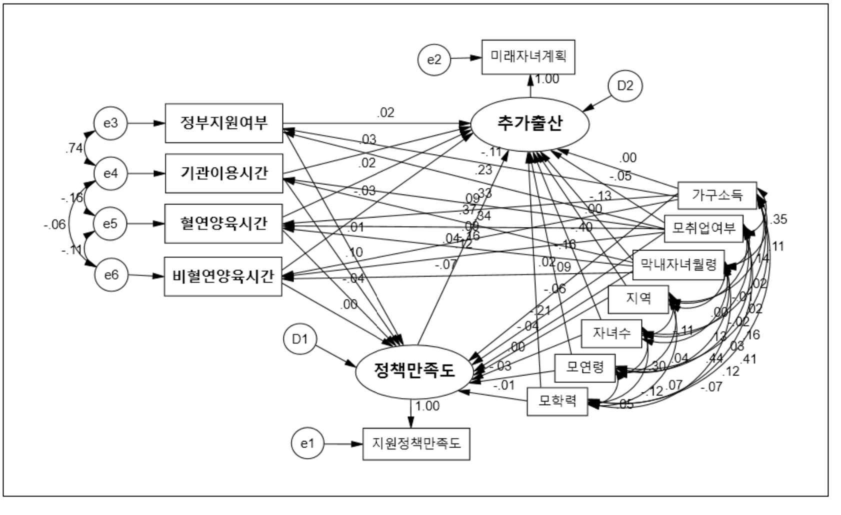

2012년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9], [그림 3-10]과 같다.

나. 한 자녀 가구 대상 분석 결과

다음은 자녀의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8〉은 연구모형의 경로 간 계수를 나타내고 〈표 3-19〉는 경로계수를 토대로 독립변수들이 정책만족도를 매개로 추가출산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1) 모형 Ⅰ

보육 관련 서비스 이용시간 변수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모형 Ⅰ의 분석 결과를 모면, 2009년 자료에서는 기관이용시간(β=-.263)은 부의 방향으로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만족도(β=.064)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으로는 정부지원 여부(β=.353)가 정책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기관이용시간(β=-.163)은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통하여 추가출산의사에 각각 2.3%, 1%의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8, 표 3-19 참조).

한편, 2012년 한 자녀 가구 대상 분석에서는 정부지원 여부(β= 0.094)와 정책만족도(β=.112)가 정의 방향으로 추가출산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기관이용시간(β=-.221)과 비혈연양육시간(β=-.095)이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 영향으로는 혈연양육시간이 부의 방향으로(β=-.006), 기관이용시간이 부의 방향으로 영향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두 연도 모형 모두에서 기관이용시간은 추가출산의사와 부

적 관련성을 보였고, 2012년에만 이에 추가하여 정부지원 여부는 정적으로, 비혈연양육시간은 부의 방향으로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자녀 가구의 추가출산의사에 있어서 정부지원 여부는 정적 관계를 갖는 반면에 서비스 이용시간은 대부분 부의 방향성을 보였다.

〈표 3-18〉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한 자녀 가구

경로	모형I			모형II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t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t
2009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353***	0.674	8.941***	0.286***	0.562	7.521***
기관이용시간	-0.163***	-0.033	-4.109***	-0.095#	-0.021	-1.912#
혈연양육시간	0.024	0.005	0.782	0.049	0.01	1.283
비혈연양육시간	-0.01	-0.007	-0.341	0.003	0.002	0.108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002	-0.002	-0.051	-0.012	-0.014	-0.3
기관이용시간	-0.263***	-0.032	-6.566***	-0.058	-0.008	-1.165
혈연양육시간	-0.023	-0.003	-0.747	0.032	0.004	0.842
비혈연양육시간	-0.006	-0.002	-0.184	0.015	0.006	0.474
정책만족도	0.064*	0.039	2.024*	0.063*	0.038	2.007*
2012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004	0.009	0.067	0.001	0.003	0.025
기관이용시간	-0.022	-0.006	-0.395	0.101	0.034	1.671#
혈연양육시간	-0.052	-0.02	-1.644	-0.032	-0.035	-1.012
비혈연양육시간	-0.033	-0.035	-1.036	-0.038	-0.015	-1.058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094#	0.094	1.747#	0.021	0.021	0.425
기관이용시간	-0.221***	-0.028	-4.074***	0.082	0.012	1.472
혈연양육시간	-0.02	-0.003	-0.644	0.03	0.005	0.899
비혈연양육시간	-0.095**	-0.045	-3.09**	-0.077**	-0.037	-2.617**
정책만족도	0.112***	0.048	3.636***	0.067*	0.029	2.335*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19〉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직접, 간접 및 총효과: 한 자녀 가구

구분	모형Ⅰ			모형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2009						
정부지원 여부	-0.002	0.023 *	0.021	-0.012	0.018 *	0.006
기관이용시간	-0.263 **	-0.01 *	-0.274 **	-0.058	-0.006 #	-0.064
혈연양육시간	-0.023	0.002	-0.021	0.032	0.003	0.035
비혈연양육시간	-0.006	-0.001	-0.006	0.015	0	0.015
정책만족도	0.064 *	0	0.064 *	0.063 *	0	0.063 *
지역				-0.041	-0.002	-0.043 #
막내 자녀 월령				-0.157 **	-0.042 #	-0.199 **
모 연령				-0.157 **	0	-0.156 **
모 학력				0.054	-0.006 *	0.048
모 취업 여부				-0.104 *	0.005	-0.098 **
가구소득				0.029	-0.004	0.026
2012						
정부지원 여부	0.094 #	0	0.094 #	0.021	0	0.021
기관이용시간	-0.221 **	-0.002	-0.223 **	0.082	0.007 *	0.089 #
혈연양육시간	-0.02	-0.006 #	-0.026	0.03	-0.003	0.027
비혈연양육시간	-0.095 **	-0.004	-0.099 **	-0.077 **	-0.002	-0.079 **
정책만족도	0.112 **	0	0.112 **	0.067 *	0	0.067 *
지역				0.036	-0.003 #	0.032
막내 자녀 월령				-0.238 **	0.022	-0.217 **
모 연령				-0.257 **	-0.001	-0.258 **
모 학력				0.045	-0.001	0.044
모 취업 여부				-0.12 **	0.026	-0.093 **
가구소득				0.049	-0.001	0.048

p 〈 .10, * p 〈 .05, ** p 〈 .01

2) 모형 II

모형 Ⅱ는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이다. 2009년에는 보육 관련 변인은 정책만족도 이외에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고, 정부지원 여부가 1.8%로 정적으로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며, 기관이용시간이 부의 방향으로 유

의하게 0.6%의 간접효과를 보였다. 2012년 모형에서는 서비스 이용에서는 기관이용시간은 유의도 5% 수준에서의 간접효과를 보였고, 비혈연양육시간이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정책만족도는 영향력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두 연도 모두에서 여전히 추가출산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값 2009년 0.063, 2012년 0.067).

통제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과 비교해 보면, 2009년 연구모형에서 추가출산의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기관이용시간은 간접효과만 남았고 정부지원 여부의 간접효과 역시 의미가 약해졌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2012년 모형에서는 추가출산의사와 부적 관계를 보였던 기관이용시간이 통제변수 투입으로 직간접효과 모두 정의 관계로 변화된 점이 특이하다. 이는 전체 가구 대상 분석 결과와도 같은데, 간접효과의 의미가 보다 선명해졌다. 비혈연양육시간은 여전히 직접적 영향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고(β값 2009년 -0.095, 2012년 -0.077), 정부지원은 의미가 약화되었다.

2012년 자료 통제변수 포함 모형 Ⅱ에서 기관이용시간이 추가출산의사와 정의 관계로 나타난 점, 비혈연양육시간이 추가출산의사와 부의 관련성을 보인 점이 특이하다. 기관이용시간이 추가출산의사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직접보다는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도가 더 크다. 2012년 영아 무상보육이나 유치원 방과후 등으로 기관이용시간이 다소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취업부모의 이용시간 만족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아 무상보육이 취업모의 정부지원 정책만족도를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비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은 공적지원 부분도 있으나 사적 영역도 있다는 점에서 부모에게, 특히 이용가능성이 높은 취업부모에게 재정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11],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1〕 통제변수 미포함 연구모형: 2012년 한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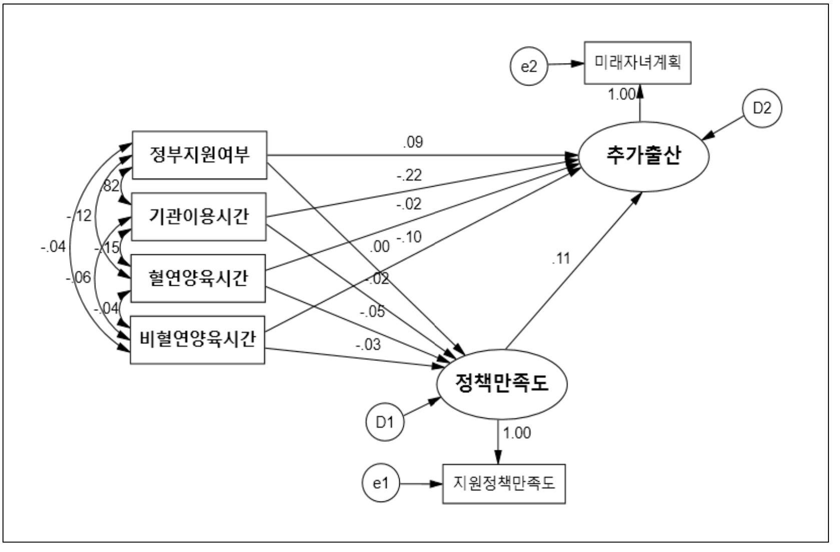

〔그림 3-12〕 통제변수 포함 연구모형: 2012년 한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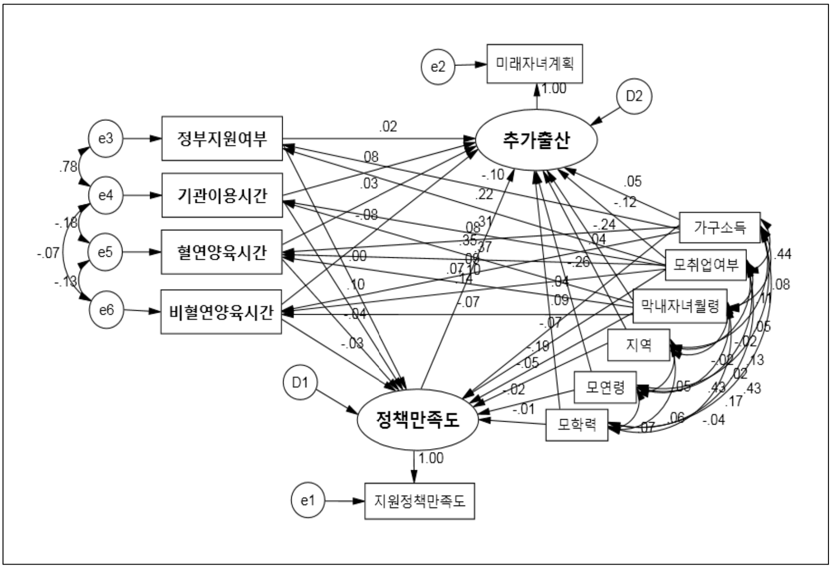

다. 두 자녀 가구 대상 분석

2009년과 2012년 두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셋째아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로계수는 〈표 3-20〉에 제시하였고, 〈표 3-21〉은 부트스트래핑 결과로 독립변수의 직접효과 정책만족도를 매개로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나타낸다.

〈표 3-20〉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두 자녀 가구

경로	모형 I			모형 II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t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t
2009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38***	0.738	11.398***	0.269***	0.53	8.123***
기관이용시간	-0.078*	-0.019	-2.324*	-0.023	-0.006	-0.575
혈연양육시간	0.001	0	0.027	0.012	0.004	0.397
비혈연양육시간	-0.041	-0.04	-1.506	-0.025	-0.024	-0.917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122**	0.078	3.29**	0.056	0.037	1.577
기관이용시간	-0.137***	-0.011	-3.853***	-0.013	-0.001	-0.292
혈연양육시간	0.007	0.001	0.257	0.048	0.005	1.451
비혈연양육시간	-0.008	-0.003	-0.27	0.015	0.005	0.509
정책만족도	-0.033	-0.011	-1.102	-0.057#	-0.019	-1.905#
2012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017	0.04	0.404	0.027	0.066	0.690
기관이용시간	-0.038	-0.012	-0.911	0.107*	0.039	2.292*
혈연양육시간	-0.033	-0.017	-1.124	0.046	0.057	1.609
비혈연양육시간	0.042	0.051	1.443	-0.04	-0.021	-1.272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029	0.013	0.683	0.002	0.001	0.059
기관이용시간	0.012	0.001	0.278	0.112*	0.008	2.348*
혈연양육시간	0.004	0	0.121	0.034	0.003	1.050
비혈연양육시간	0.024	0.006	0.832	0.047	0.011	1.600
정책만족도	0.05#	0.01	1.751#	0.033	0.006	1.109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21〉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직접, 간접 및 총효과: 두 자녀 가구

구분	모형Ⅰ			모형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2009						
정부지원 여부	0.122 **	-0.013	0.109 **	0.056 #	-0.015 #	0.041
기관이용시간	-0.137 **	0.003	-0.135 **	-0.013	0.001	-0.011
혈연양육시간	0.007	0	0.007	0.048	-0.001	0.047 #
비혈연양육시간	-0.008	0.001	-0.006	0.015	0.001	0.016
정책만족도	-0.033	0	-0.033	-0.057 #	0	-0.057 #
지역				-0.037	0.003 #	-0.034
막내 자녀 월령				-0.028	-0.015	-0.043
모 연령				-0.19 **	0.002	-0.188 **
모 학력				-0.015	0.001	-0.014
모 취업 여부				-0.065 #	0.021	-0.044
가구소득				-0.044	0.002	-0.042
2012						
정부지원 여부	0.029	0.001	0.029	0.002	0.001	0.003
기관이용시간	0.012	-0.002	0.01	0.112 *	0.003	0.115 *
혈연양육시간	0.004	-0.002	0.002	0.034	-0.001	0.032
비혈연양육시간	0.024	0.002	0.026	0.047	0.002	0.048
정책만족도	0.05 #	0	0.05 #	0.033	0	0.033
지역				-0.022	0	-0.023
막내 자녀 월령				-0.067 #	0.03	-0.037
모 연령				-0.088 *	-0.001	-0.089 **
모 학력				0.025	-0.001	0.025
모 취업 여부				-0.074 #	0.052 **	-0.023
가구소득				-0.017	0.011	-0.006

p 〈 .10, * p 〈 .05, ** p 〈 .01

1) 모형 Ⅰ

먼저 모형 Ⅰ을 보면 〈표 3-20〉과 〈표 3-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셋째아 출산의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009년에만 나타났는데, 정부지원 여부는 β값이 0.122로 정적으로, 기관이용시간은 β값이 -0.78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2012년 연구모형의 직접효과는 유의도 10% 수준에서 정책만족도가 관련성을 보였다.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009년, 2012년 연구모형 모두 유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9년 자료에서는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정책만족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서 정책만족도에 정적,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정부지원 여부와 기관이용시간의 간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2012년의 경우에는 정책만족도와 추가출산의사와의 관련성은 10% 수준에서 정적 방향으로 미약하게 나타났으나 독립변수들 중 정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즉, 정부지원 여부가 2009년에는 추가출산에 총 10.9%의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나, 지원의 보편화로 2012년에는 그 의미가 약화되었다.

2) 모형 II

통제변수가 포함된 분석에서 정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보육 관련 변수는, 2009년 연구모형은 지원정책만족도이고 혈연양육시간은 총효과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2012년에는 기관이용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만족도를 통해 추가출산에 간접 영향을 미친 변인은 2009년엔 정부지원 여부이고 2012년에는 없었다. 정책만족도 자체가 추가출산의사에 2009년에는 유의도 10% 수준에서 부정적 관련성을 보였고, 2012년에는 정의 방향이기는 하지만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2009년 자료 분석에서 정책만족도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의 β값이 통제변수 포함 여부별로 각각 0.38, 0.269로 높게 나타나서 공통적으로 정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관이용시간은 2009년에는 통제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모형에서 정책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나 통제변수를 투입하자 영향력이 유의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방향이 바뀌면서 유의도가 나타났다.

〔그림 3-13〕 통제변수 미포함 연구모형: 2012년 두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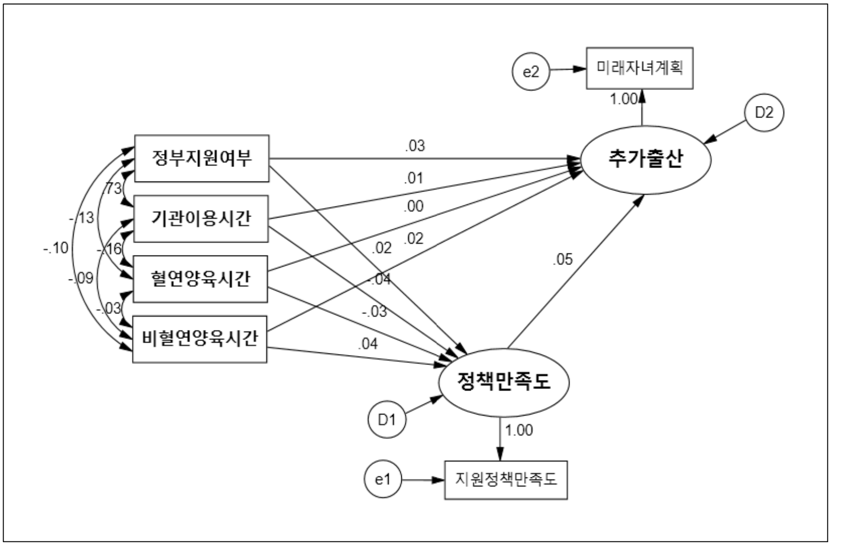

〔그림 3-14〕 통제변수 포함 연구모형: 2012년 두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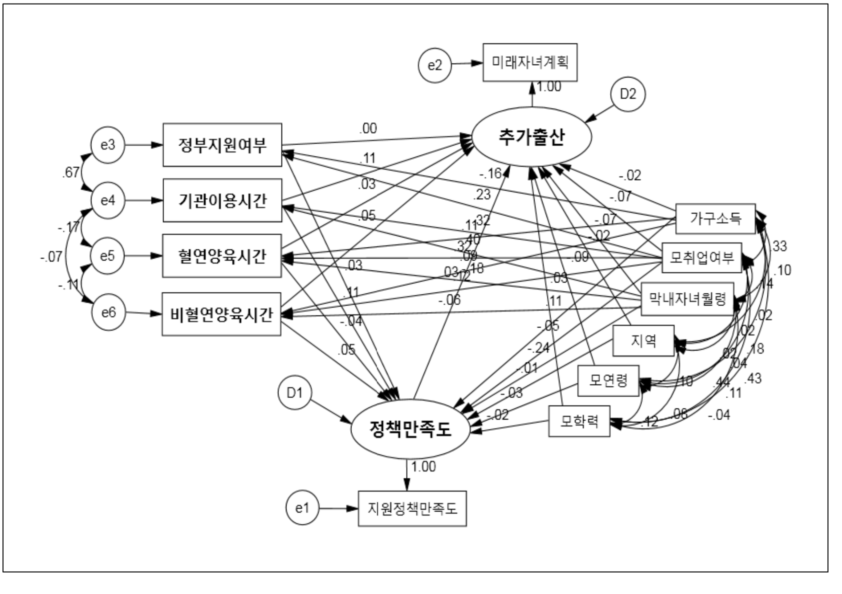

2012년의 경우, 통제변수가 포함되지 않는 모형에서는 정책만족도만 추가출산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통제변수가 투입되면서 유의성은 없어졌다. 정책만족도에 대한 기관이용시간의 β값은 0.107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의 취업이 셋째아 추가출산의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2009년에는 혈연양육시간, 2012년에는 기관이용시간이 추가출산의사에 직접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정부지원이나 기관이용시간이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3], [그림 3-14]는 2012년 자료 분석 결과 그림이다.

4. 요약 및 시사점

〈표 3-22〉는 미시 경로분석 결과 추가출산의사 여부에 대하여 각각 직간접적으로 유의도 10% 이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준 독립변인들의 방향성과 유의도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지원이나 보육 서비스 이용은 직접 또는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약하나마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및 한 자녀와 두 자녀 가구로 구분하여 볼 때 출생 순위가 높아질수록 보육 관련 변인의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분석모형의 RMSEA 지수가 다소 높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각 변수들이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 여부는 2009년에는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였다. 2009년에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였을 때도 한 자녀 가구의 추가출산의사에 정

부지원은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2년에는 이러한 의미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무상보육 등 정부지원 대상 확대로 상대적 차별성이 없어졌거나 역차별 인식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정책만족도와 취업 여부와의 관련성 자체가 부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둘째, 기관이용시간은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추가출산의사와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2012년에 통제변수 포함 분석에서 전체 및 한자녀 가구에서 추가출산의사에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이 추가출산의사에 부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만 5세아 및 영아 무상보육이 추진되는 환경에서 장시간 기관 서비스 이용이 유용한 취업모 지원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혈연양육시간은 전체 분석에서 통제변수가 없으면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경향을 보였고, 취업변수 등 통제변인이 포함되면 2009년에는 관계가 소멸되었으나 2012년에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자녀 수별 분석에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비혈연양육시간은 추가출산에 부의 방향으로 관련성을 갖거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체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비혈연양육시간이 길수록 부모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출산의사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012년 분석에서 기관이용시간이 일관성 있게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이 있음을 나타낸 것은 기관 중심의 보육 서비스가 제대로 일·가정 양립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더불어서 혈연과 비혈연양육지원이 특히 취업부모가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추가출산의사에 기여할 정도의 만족할 만한 수단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양육지원정책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기관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 해결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은 정부가 꾸준

히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개별 양육지원은 기관보육 서비스 대체 수단으로 조부모 등 혈연과 비혈연에 의한 자녀양육지원 부분에도 정책적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표 3-22〉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미시변수 경로분석 결과 개요 요약

구분	2009				201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전체								
정부지원 여부		+ #						
기관이용시간	- **	- #	- #		- **			+ *
혈연양육시간	+ #				+ #	- #	+ *	
비혈연양육시간		- #			- #			
정책만족도	+ #	na		na	+ ***	na	+ *	na
한 자녀 가구								
정부지원 여부		+ *		+ *	+ #			
기관이용시간	- **	- *		- #	- **			+ *
혈연양육시간						- #		
비혈연양육시간					- **		- **	
정책만족도	+ *	na	+ *	na	+ ***	na	+ *	na
두 자녀 가구								
정부지원 여부	+ **		+ #	- #				
기관이용시간	- **						+ *	
혈연양육시간			(총효과)					
비혈연양육시간								
정책만족도		na	- #	na	+ #	na		na

제3절 미시-거시 통합 분석

1. 분석모형

미시-거시 통합 분석은 개인 단위 미시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에 시·군·구 단위 거시자료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실시하는 분석모형이다. 개인의 보육 관련 이용이나 비용 지원 여부 및 정책만족도 이외에 시·군·구 단위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차이가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 모형이다.

분석은 앞 절의 미시 개인 단위 분석과 같이 경로분석으로 통제변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3-15] 통제변수 미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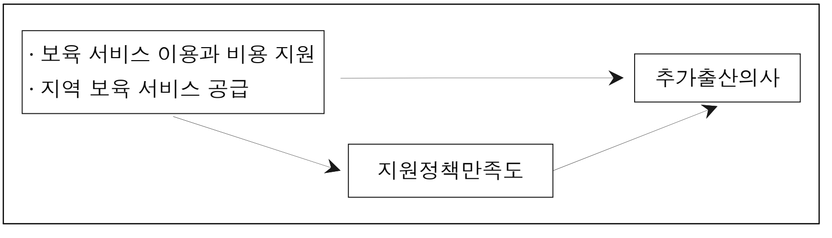

[그림 3-16]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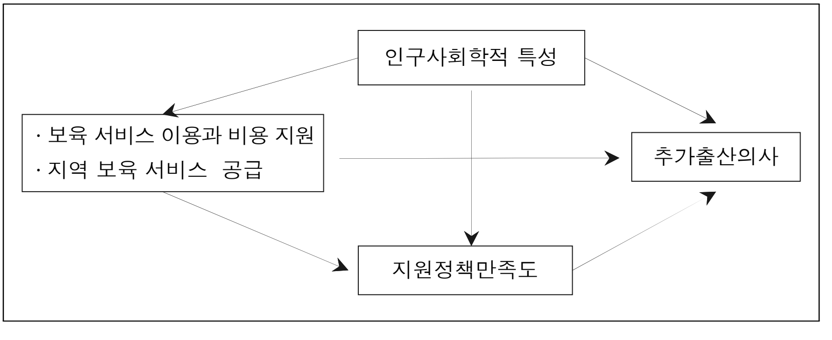

〔그림 3-17〕 통제변수 미포함 구조방정식모델에 따른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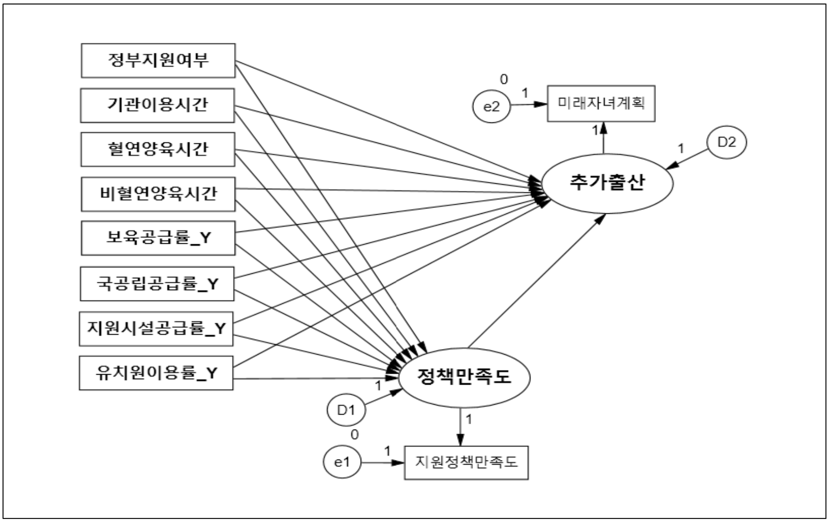

〔그림 3-18〕 통제변수 포함 구조방정식모델에 따른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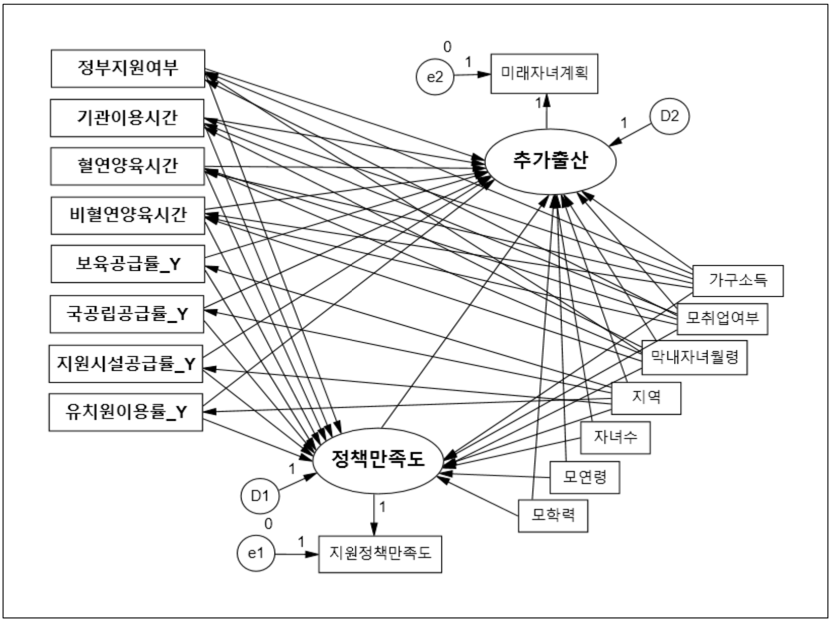

지원정책만족도를 매개로 정부지원 여부 및 기관이용시간, 혈연양육시간, 비혈연양육시간과 같은 미시자료와 시·군·구 단위 보육공급률, 국공립공급률, 지원시설공급률, 유치원이용률과 같은 거시변인이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연구모형 Ⅰ, 그리고 여기에 아동 및 모, 가구 특성 등의 배경변인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연구모형 Ⅱ를 설정하였다.

[그림 3-15]와 [그림 3-16]은 통제변수 포함 여부에 따른 연구모형이고, [그림 3-17]과 [그림 3-18]은 이러한 모형을 구조방정식모델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다.

2. 경로분석 방법

경로분석 방법이나 적합도 검증 과정은 미시 분석과 동일하다.

미시-거시 통합 분석도 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미시변수인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과 거시변수인 시·군·구 단위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이 추가자녀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자녀를 한 자녀와 두 자녀로 구분하여 한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시변수인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과 거시변수인 시·군·구 단위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이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다시 두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개인 미시변수 및 지역 단위 거시변수를 사용하여 셋째 자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은 미시 분석에서와 같이 지역, 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모 특성(연령, 학력, 취업 등), 가구소득 등 배경변인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모형과 포함되지 않은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은 연도별로 미시 분석과 같이 별도로 실시하였다.[34]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개인 단위 미시 분석모형 적합도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없는 모형 Ⅰ은 2009년과 2012년 모두 GFI와 CFI가 양호하나, RMSEA는 적합도가 낮았다. 그러나 배경변인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연구모형 Ⅱ의 적합도는 CFI가 모두 0.9 내외이고 RMSEA는 한 자녀 가구 2012년 모형만 .087이고 이외는 모두 0.08 이하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RMSEA 지수로 보면 거시모형이나 미시 모형보다는 미시-거시 통합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3〉 미시-거시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대상	Model		CMIN	df	GFI	CFI	TLI	RMSEA
전체	모형Ⅰ	2009년	.000	0	1.000	1.000	1.000	.183
		2012년	.000	0	1.000	1.000	1.000	.191
	모형Ⅱ	2009년	718.654	60	.969	.933	.848	.065
		2012년	997.405	58	.958	.906	.779	.080
한 자녀 가구	모형Ⅰ	2009년	.000	0	1.000	1.000	1.000	.181
		2012년	.000	0	1.000	1.000	1.000	.206
	모형Ⅱ	2009년	266.953	60	.970	.945	.875	.059
		2012년	520.231	60	.946	.891	.752	.087
두 자녀 가구	모형Ⅰ	2009년	.000	0	1.000	1.000	1.000	.178
		2012년	.000	0	1.000	1.000	1.000	.174
	모형Ⅱ	2009년	376.314	60	.967	.924	.827	.066
		2012년	505.918	59	.958	.885	.735	.079

34) 미시 분석과 같이 조사 연도에 따른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각 분석 대상에서 통제변수 포함 및 미포함 모형 모두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과 자유모델(free model, unconstrained model)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사 연도의 조절변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제변인이 포함된 모형 Ⅱ에서는 통제변수는 미시 분석과 동일하므로 변수 간 상관계수 역시 분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로분석은 미시변수인 정부지원 여부, 기관이용시간, 혈연양육시간, 비혈연양육시간과 거시변수인 보육공급률, 국공립공급률, 지원시설공급률, 유치원이용률을 독립변수로 두고 정책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경로 간 계수와 이를 토대로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을 사용하여 추가출산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경로분석 결과

가. 전체 가구 대상 분석 결과

〈표 3-24〉는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경로계수를 나타내며, 〈표 3-25〉는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을 사용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이다.

1) 모형 Ⅰ

통제변인 없는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보육 관련 여러 변인들은 그 정도가 미약하지만 추가출산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2009년은 혈연양육시간이 β값 0.037로 유의도 10% 수준에서 관련성을 보였고 기관이용시간이 β값 -0.202로 부의 방향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거시 단위 공급의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만족도는 β값 .037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만

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긍정적 요인으로 정부지원 여부와 국공립 및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이 유의도 10% 수준에 추가출산의사와 관련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관이용시간은 부의 방향에서 유의하였다. 〈표 Ⅲ-3-2〉를 보면 정책만족도에 대한 β값은 이용시간 -0.129, 당해 연도 국공립공급률이 0.041, 지원시설공급률이 0.105였다.

2012년의 경우는 직접효과는 2009년과 유사하게 혈연양육시간(β=.047)과 정책만족도(β=.072)가 정의 방향으로 추가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기관이용시간과 비혈연양육시간(β=-.034)은 부의 방향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국공립공급률이 정의 방향으로, 혈연양육시간이 부의 방향으로 각각 0.2%, 0.3% 유의도 10% 수준에서 추가출산의사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추가출산의사에 정적 관계를 나타낸 변인만을 보면 2009년 미시-거시 통합모형에서 미시변인은 혈연양육시간이 직접, 정부지원 여부와 거시변인은 국공립공급률, 지원시설공급률이 정책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미시-거시 통합 연구에서는 혈연양육시간이 직접, 미시변인인 정부지원과 거시변인인 보육공급률과 국공립공급률이 간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 변화 없이 유의한 변인은 총효과는 혈연양육시간이 유일하고, 국공립공급률도 추가출산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2009년에는 정책만족도의 차이를 통하여 추가출산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편적인 제도가 되면서 2009년에 나타난 것과 같은 관련성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24〉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미시-거시변수 경로분석 결과: 전체

경로	모형 I			모형 II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t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t
2009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363	0.694	14.849	0.296***	0.564	11.572***
기관이용시간	-0.129***	-0.029	-5.336***	-0.079*	-0.018	-2.424*
혈연양육시간	0.01	0.003	0.511	0.026	0.007	1.165
비혈연양육시간	-0.027	-0.022	-1.442	-0.014	-0.011	-0.709
보육공급률_Y	0.004	0	0.189	-0.011	-0.001	-0.511
국공립공급률_Y	0.041#	0.008	1.657#	0.038	0.008	1.636
지원시설공급률_Y	0.105***	0.011	4.252***	0.086***	0.009	3.428***
유치원이용률_Y	0.009	0.001	0.429	-0.013	-0.001	-0.687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019	-0.018	-0.709	0.011	0.01	0.452
기관이용시간	-0.202***	-0.023	-8.011***	-0.046	-0.005	-1.544
혈연양육시간	0.037#	0.005	1.876#	0.026	0.003	1.283
비혈연양육시간	0.003	0.001	0.14	0.022	0.009	1.268
보육공급률_Y	0.021	0.001	0.917	0.021	0.001	1.051
국공립공급률_Y	0.02	0.002	0.774	-0.002	0	-0.111
지원시설공급률_Y	-0.002	0	-0.07	0.027	0.001	1.184
유치원이용률_Y	0.014	0.001	0.689	-0.013	-0.001	-0.804
정책만족도	0.037#	0.018	1.791#	0.019	0.009	1.039
2012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004	0.01	0.128	0.01	0.022	0.289
기관이용시간	-0.038	-0.012	-1.176	0.11**	0.034	2.762**
혈연양육시간	-0.037#	-0.017	-1.828#	-0.032	-0.015	-1.445
비혈연양육시간	-0.003	-0.003	-0.132	-0.002	-0.002	-0.103
보육공급률_Y	0.051*	0.005	2.275*	0.041#	0.004	1.738#
국공립공급률_Y	0.034	0.011	1.397	0.037	0.012	1.639
지원시설공급률_Y	0.023	0.004	1.013	0.018	0.003	0.825
유치원이용률_Y	-0.023	-0.003	-1.002	-0.014	-0.002	-0.677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044	0.037	1.374	0.021	0.018	0.731
기관이용시간	-0.159***	-0.018	-4.932***	0.032	0.004	0.915
혈연양육시간	0.047*	0.008	2.36*	0.016	0.003	0.831
비혈연양육시간	-0.034#	-0.015	-1.735#	-0.03#	-0.013	-1.714#
보육공급률_Y	0.012	0	0.517	0.005	0	0.24
국공립공급률_Y	-0.015	-0.002	-0.631	-0.025	-0.003	-1.292
지원시설공급률_Y	-0.007	0	-0.309	0.027	0.002	1.414
유치원이용률_Y	0.002	0	0.076	-0.002	0	-0.124
정책만족도	0.072***	0.026	3.646***	0.04*	0.014	2.289*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25〉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미시-거시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전체

구분	모형 I			모형 II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2009						
정부지원 여부	-0.019	0.013 #	-0.005	0.011	0.006	0.016
기관이용시간	-0.202 **	-0.005 #	-0.207 **	-0.046	-0.001	-0.047
혈연양육시간	0.037 #	0	0.037 #	0.026	0	0.027
비혈연양육시간	0.003	-0.001 #	0.002	0.022	0	0.022
보육공급률_Y	0.021	0	0.021	0.021	0	0.021
국공립공급률_Y	0.02	0.001 #	0.021	-0.002	0.001	-0.002
지원시설공급률_Y	-0.002	0.004 #	0.002	0.027	0.002	0.029
유치원이용률_Y	0.014	0	0.015	-0.013	0	-0.014
정책만족도	0.037 #	-	0.037 #	0.019	-	-0.019
지역				-0.025	-0.012	-0.038 *
자녀 수				-0.392 **	0	-0.392 **
막내 자녀 월령				-0.102 **	-0.029	-0.131 **
모 연령				-0.204 **	0	-0.205 **
모 학력				0.038 #	-0.001	0.037 #
모 취업 여부				-0.049 *	0.004	-0.045 **
가구소득				-0.013	0.002	-0.011
2012						
정부지원 여부	0.044	0	0.045	0.021	0	0.021
기관이용시간	-0.159 **	-0.003	-0.162 **	0.032	0.004 *	0.036
혈연양육시간	0.047 *	-0.003 #	0.045 #	0.016	-0.001	0.015
비혈연양육시간	-0.034	0	-0.035	-0.03	0	-0.03
보육공급률_Y	0.012	0.004 *	0.015	0.005	0.002 *	0.007
국공립공급률_Y	-0.015	0.002 #	-0.013	-0.025	0.001 #	-0.024
지원시설공급률_Y	-0.007	0.002	-0.005	0.027	0.001	0.027
유치원이용률_Y	0.002	-0.002	0	-0.002	-0.001	-0.003
정책만족도	0.072 ***	-	0.072 ***	.0.04 *	-	0.04 *
지역				0.01	-0.009	0.001
자녀 수				-0.406 **	0	-0.406 **
막내 자녀 월령				-0.13 **	0.023	-0.106 **
모 연령				-0.159 **	-0.001	-0.16 **
모 학력				0.025	0	0.024
모 취업 여부				-0.048 **	0.014	-0.034 *
가구소득				0.001	-0.006	-0.005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모형 II

통제변수가 포함된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2009년 자료나 2012년 자료 분석 모두에서 보육 서비스 이용이나 시·군·구 단위 거시 보육 서비스 공급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2012년 자료 분석에서 비혈연양육시간이 부의 방향으로 10% 유의도 수준에서 출산의사와 관련성을 보였다. 이 외 통제변수가 없을 경우에 직접 추가출산의사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던 변수의 의미가 유의성이 없는 수준으로 약해졌다. 정책만족도 변수조차도 2009년 자료에서는 유의성이 없어졌다.

정책만족도의 유의성은 보육 관련 변수들의 간접효과에 영향을 준다.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2009년 자료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정책만족도 자체가 추가출산의사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3-24〉를 보면 정부지원이나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이 β값 0.086으로 정책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유의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정책만족도가 추가출산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분석되었고(β값 0.04), 따라서 미시변인인 기관이용시간과 거시변인으로 보육공급률은 유의도 5%,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은 유의도 10% 수준에서 정책만족도를 매개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3-23〉을 보면 정책만족도에 대하여 기관이용시간과 보육공급률이 각각 β값이 0.11, 0.041로 유의한 관계이다.

[그림 3-19], [그림 3-20]은 통제변수 포함 여부별 2012년 분석 결과 그림이다(2009년 결과 그림은 부록 참조).

〔그림 3-19〕 통제변수 미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2012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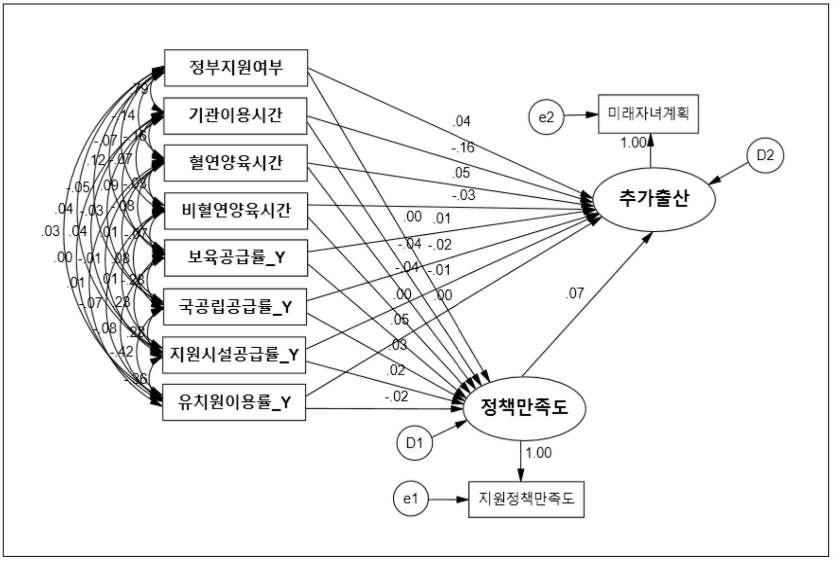

〔그림 3-20〕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2012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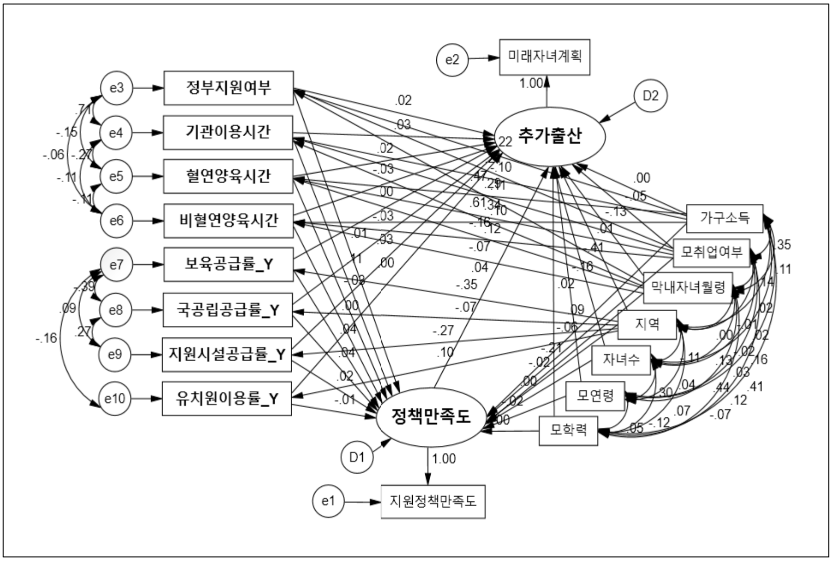

나. 한 자녀 가구 대상 분석 결과

한 자녀 가구만을 선별하여 앞에서와 같이 미시변수와 거시변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정책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둘째 자녀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경로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직접효과 이외에 간접효과, 총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26, 표 3-27 참조).

1) 모형 Ⅰ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시변인 정책만족도의 직접효과와 거시변인인 지원시설공급률의 간접효과는 조사 시기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직접효과는 2009년도의 경우, 미시변인인 기관이용시간(β=-.257), 2012년도 자료 분석에서도 미시변인 중 기관이용시간(β=-.211)과 비혈연양육시간(β=-.083)이 추가출산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거시변인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만족도는 2009년, 2012년 모두 각각 β값이 0.063, 0.111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2009년의 경우 정부지원 여부가 2.2%, 거시변인인 지원시설공급률이 0.5%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2012년에는 지원시설공급률만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추가출산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0.7%의 간접 영향을 미쳤다. 〈표 3-26〉을 보면 각 연도 정책만족도에 대한 지원시설공급률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0.076, 0.06이다.

〈표 3-26〉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미시-거시변수 경로분석 결과: 한 자녀 가구

경로	모형 I (통제변수 미포함)			모형 II (통제변수 포함)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t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t
2009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344***	0.656	8.574***	0.29***	0.553	6.823***
기관이용시간	-0.16***	-0.032	-4.012***	-0.107#	-0.021	-1.917#
혈연양육시간	0.02	0.004	0.64	0.045	0.009	1.157
비혈연양육시간	-0.013	-0.009	-0.423	0	0	0.008
보육공급률_Y	-0.006	0	-0.179	-0.015	-0.001	-0.438
국공립공급률_Y	0	0	0.002	0.001	0	0.029
지원시설공급률_Y	0.076#	0.008	1.904#	0.068#	0.007	1.702#
유치원이용률_Y	0.006	0.001	0.191	-0.01	-0.001	-0.318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012	-0.014	-0.285	-0.014	-0.016	-0.328
기관이용시간	-0.257***	-0.031	-6.37***	-0.062	-0.008	-1.125
혈연양육시간	-0.021	-0.003	-0.684	0.033	0.004	0.862
비혈연양육시간	-0.004	-0.001	-0.116	0.016	0.006	0.506
보육공급률_Y	0.03	0.001	0.854	0.021	0.001	0.596
국공립공급률_Y	-0.012	-0.001	-0.279	0.003	0	0.09
지원시설공급률_Y	0.021	0.001	0.511	-0.003	0	-0.081
유치원이용률_Y	0.022	0.001	0.652	0.019	0.001	0.649
정책만족도	0.063*	0.038	1.973*	0.063*	0.038	2.019*
2012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007	0.017	0.13	0.005	0.011	0.081
기관이용시간	-0.03	-0.009	-0.539	0.107	0.032	1.567
혈연양육시간	-0.049	-0.019	-1.558	-0.034	-0.013	-0.927
비혈연양육시간	-0.04	-0.044	-1.265	-0.04	-0.043	-1.235
보육공급률_Y	0.045	0.005	1.274	0.022	0.002	0.581
국공립공급률_Y	0.046	0.015	1.123	0.041	0.013	1.105
지원시설공급률_Y	0.06#	0.012	1.69#	0.048	0.01	1.375
유치원이용률_Y	-0.015	-0.002	-0.421	-0.012	-0.002	-0.388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079	0.079	1.462	0.017	0.017	0.327
기관이용시간	-0.211***	-0.027	-3.885***	0.095	0.012	1.486
혈연양육시간	-0.019	-0.003	-0.611	0.03	0.005	0.868
비혈연양육시간	-0.083**	-0.039	-2.665**	-0.073*	-0.034	-2.444*
보육공급률_Y	0.043	0.002	1.221	0.012	0.001	0.332
국공립공급률_Y	-0.053	-0.007	-1.328	-0.023	-0.003	-0.679
지원시설공급률_Y	0.026	0.002	0.732	0.017	0.001	0.518
유치원이용률_Y	0.01	0.001	0.274	0.016	0.001	0.557
정책만족도	0.111***	0.048	3.616***	0.069*	0.03	2.356*

p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통제변수 투입 결과는 부록에 제시함.

〈표 3-27〉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미시-거시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한 자녀 가구

구분	모형 I			모형 II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2009						
정부지원 여부	-0.012	0.022 *	0.01	-0.014	0.018 *	0.004
기관이용시간	-0.257 **	-0.01 *	-0.267 **	-0.062	-0.007 #	-0.068
혈연양육시간	-0.021	0.001	-0.02	0.033	0.003	0.036
비혈연양육시간	-0.004	-0.001	-0.004	0.016	0	0.016
보육공급률_Y	0.03	0	0.03	0.021	-0.001	0.02
국공립공급률_Y	-0.012	0	-0.012	0.003	0	0.003
지원시설공급률_Y	0.021	0.005 *	0.025	-0.003	0.004 #	0.001
유치원이용률_Y	0.022	0	0.022	0.019	-0.001	0.019
정책만족도	0.064 *		0.064 *	0.063 *		0.063 *
지역				-0.036	-0.008	-0.044 #
막내 자녀 월령				-0.156 **	-0.051 #	-0.207 **
모 연령				-0.155 **	0.001	-0.154 **
모 학력				0.055	-0.006 *	0.049
모 취업 여부				-0.104 *	0.003	-0.101 **
가구소득				0.032	0.007	0.039
2012						
정부지원 여부	0.079	0.001	0.08	0.017	0	0.017
기관이용시간	-0.211 **	-0.003	-0.214 **	0.095	0.007 #	0.102 #
혈연양육시간	-0.019	-0.005	-0.025	0.03	-0.002	0.027
비혈연양육시간	-0.083 **	-0.004	-0.088 **	-0.073 **	-0.003	-0.076 **
보육공급률_Y	0.043	0.005	0.048	0.012	0.002	0.013
국공립공급률_Y	-0.053	0.005	-0.048	-0.023	0.003	-0.021
지원시설공급률_Y	0.026	0.007 *	0.032	0.017	0.003	0.02
유치원이용률_Y	0.01	-0.002	0.008	0.016	-0.001	0.015
정책만족도	0.111 ***		0.111 ***	0.069 *		0.069 *
지역				0.042	-0.01	0.032
막내 자녀 월령				-0.24 **	0.062 *	-0.179 **
모 연령				-0.256 **	-0.001	-0.258 **
모 학력				0.046	0	0.046
모 취업 여부				-0.123 **	0.028	-0.095 **
가구소득				0.055	-0.013	0.04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모형 II

통제변수가 포함된 분석 결과, 둘째 자녀 추가출산의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보육 관련 변수는 두 해 연도 분석에서 모두 거시변수는 없었고, 미시변수인 보육지원 정책만족도가 공통적이었다. 이 외에 2012년에 비혈연양육시간은 β값이 -0.073으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보육지원 정책만족도는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β값이 2009년 0.063, 2012년 0.069였다. 통제변수 미포함 시 직접효과가 유의한 기관이용시간 변수는 통제변수가 포함되면서 유의성이 사라졌다.

그러면 미시, 거시 보육 관련 변수들이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어떠한가? 2009년에는 거시변수로 정부지원시설공급률은 0.04%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미시변수로 정부지원 여부는 1.8% 정적으로, 기관이용시간은 0.7%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간접효과가 유의한 변수는 통제변수 미포함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6〉을 보면 정책만족도에 대하여 정부지원 여부의 β값 0.29, 기관이용시간이 -0.107이고, 거시변인 중에서는 지원시설공급률의 β값이 0.068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기관이용시간이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방향성이 2009년과 비교하여 변경되었다. 2009년과 비교하여 거시변인 중 지원시설공급률과 미시변인 중 정부지원 여부의 정적 간접효과는 2012년에는 유의 수준 이하로 영향력이 낮아졌다.

통제변인이 없는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21]과 같고,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22]와 같다.

[그림 3-21] 통제변수 미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2012년 한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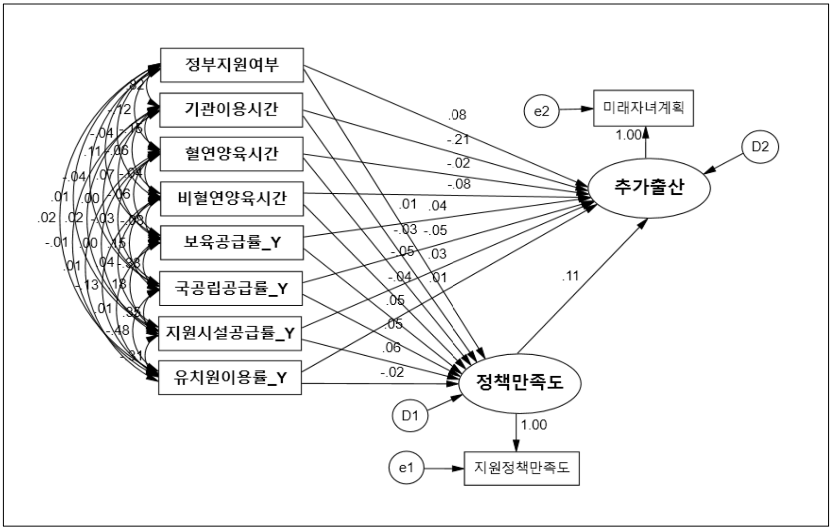

[그림 3-22]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2012년 한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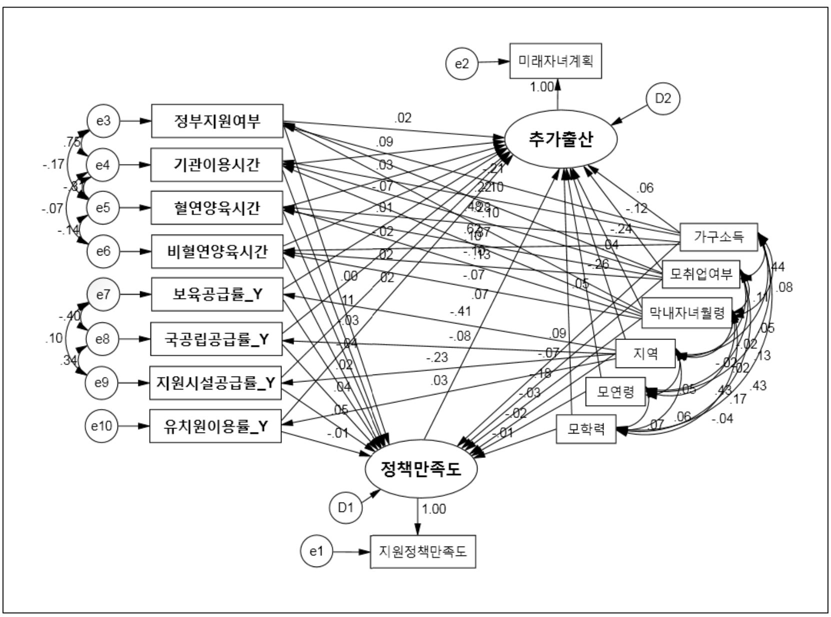

다. 두 자녀 가구

다음은 두 자녀 가구 대상 분석이다. 〈표 3-28〉은 연도별로 각 모형의 경로계수를 나타내고, 〈표 3-29〉는 경로계수를 기초로 산출한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1) 모형 Ⅰ

두 자녀 가구의 2009년 미시-거시 통합 분석모형의 경우, 미시변인 중 정부지원(β=.108)이 정의 방향, 기관이용시간(β=-.141)이 부의 방향으로, 거시변인 중에서는 지원시설공급률(β=.077)이 정의 방향으로 추가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간접효과의 주요 변수인 정책만족도는 2009년 자료 분석에서는 추가출산의사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따라서 보육 관련 변인의 간접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8〉을 보면 미시변인으로 정부지원(β=.373)이 정의 방향으로, 기관이용시간(β=-.089)과 비혈연양육시간(β=-.045)이 부의 방향으로 정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거시변인 중에서는 지원시설공급률(β=.102)이 정책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정책만족도 자체의 영향에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보육 관련 변인 등의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012년 연구모형에서는 직접효과를 보인 변인은 없고 거시변인 중 보육공급률이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10% 유의도 수준에서 추가출산의사에 0.3%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만족도에 대한 보육공급률의 β값은 0.059이다.

〈표 3-28〉 미시-거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 두 자녀 가구

경로	모형 I			모형 II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t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t
2009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373***	0.724	11.019***	0.277***	0.537	7.816***
기관이용시간	-0.089**	-0.021	-2.67**	-0.033	-0.008	-0.753
혈연양육시간	-0.009	-0.003	-0.334	0.009	0.003	0.303
비혈연양육시간	-0.045#	-0.044	-1.676#	-0.028	-0.027	-1.022
보육공급률_Y	-0.007	0	-0.207	-0.027	-0.002	-0.876
국공립공급률_Y	0.049	0.011	1.4	0.044	0.01	1.33
지원시설공급률_Y	0.102**	0.012	2.896**	0.082*	0.009	2.332*
유치원이용률_Y	0.021	0.002	0.731	-0.007	-0.001	-0.278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108**	0.069	2.855**	0.049	0.031	1.266
기관이용시간	-0.141***	-0.011	-3.957***	-0.018	-0.001	-0.396
혈연양육시간	0.005	0.001	0.177	0.05	0.005	1.512
비혈연양육시간	-0.009	-0.003	-0.306	0.015	0.005	0.529
보육공급률_Y	0.041	0.001	1.222	0.037	0.001	1.134
국공립공급률_Y	-0.044	-0.003	-1.176	-0.029	-0.002	-0.826
지원시설공급률_Y	0.077*	0.003	2.061*	0.068#	0.003	1.806#
유치원이용률_Y	-0.035	-0.001	-1.162	-0.044	-0.002	-1.608
정책만족도	-0.04	-0.013	-1.331	-0.063*	-0.021	-2.096*
2012년						
→ 정책만족도						
정부지원 여부	0.012	0.03	0.295	0.027	0.065	0.637
기관이용시간	-0.038	-0.012	-0.913	0.116*	0.038	2.25*
혈연양육시간	-0.028	-0.015	-0.972	-0.038	-0.02	-1.197
비혈연양육시간	0.043	0.052	1.482	0.046	0.056	1.599
보육공급률_Y	0.059#	0.006	1.857#	0.06#	0.006	1.876#
국공립공급률_Y	0.039	0.013	1.13	0.053#	0.018	1.713#
지원시설공급률_Y	-0.016	-0.003	-0.486	-0.01	-0.002	-0.322
유치원이용률_Y	-0.02	-0.003	-0.588	-0.004	-0.001	-0.157
→ 추가출산						
정부지원 여부	0.031	0.014	0.744	0.007	0.003	0.153
기관이용시간	0.008	0	0.184	0.122*	0.008	2.329*
혈연양육시간	0.004	0	0.145	0.035	0.004	1.083
비혈연양육시간	0.023	0.005	0.795	0.046	0.011	1.553
보육공급률_Y	-0.002	0	-0.071	-0.023	0	-0.695
국공립공급률_Y	-0.005	0	-0.15	-0.001	0	-0.04
지원시설공급률_Y	0.031	0.001	0.947	0.019	0.001	0.597
유치원이용률_Y	-0.053	-0.001	-1.587	-0.058*	-0.002	-2.03*
정책만족도	0.048#	0.009	1.677#	0.031	0.006	1.074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29〉 미시-거시 통합 경로분석의 직간접효과, 총효과: 두 자녀 가구

구분	모형Ⅰ			모형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2009						
정부지원 여부	0.108 **	-0.015	0.093 **	0.049	-0.018 *	0.031
기관이용시간	-0.141 **	0.004	-0.138 **	-0.018	0.002	-0.016
혈연양육시간	0.005	0.000	0.005	0.05 #	-0.001	0.049 #
비혈연양육시간	-0.009	0.002	-0.007	0.015	0.002	0.017
보육공급률_Y	0.041	0.000	0.042	0.037	0.002	0.038
국공립공급률_Y	-0.044	-0.002	-0.046	-0.029	-0.003 #	-0.032
지원시설공급률_Y	0.077	-0.004	0.073	0.068	-0.005 #	0.062
유치원이용률_Y	-0.035	-0.001	-0.036	-0.044	0.000	-0.044
정책만족도	0.04	-	0.04	-0.063 #	-	-0.063 #
지역				-0.017	-0.019 #	-0.036
막내 자녀 월령				-0.025	-0.009	-0.034
모 연령				-0.19 **	0.002	-0.187 **
모 학력				-0.016	0.001	-0.014
모 취업 여부				-0.074 *	0.019	-0.055 #
가구소득				-0.042	0.007	-0.035
2012						
정부지원 여부	0.031	0.001	0.032	0.007	0.001	0.007
기관이용시간	0.008	-0.002	0.006	0.122 *	0.004	0.126 *
혈연양육시간	0.004	-0.001	0.003	0.035	-0.001	0.034
비혈연양육시간	0.023	0.002	0.025	0.046	0.001	0.047
보육공급률_Y	-0.002	0.003 #	0.001	-0.023	0.002	-0.021
국공립공급률_Y	-0.005	0.002	-0.003	-0.001	0.002	0.000
지원시설공급률_Y	0.031	-0.001	0.03	0.019	0.000	0.019
유치원이용률_Y	-0.053	-0.001	-0.054	-0.058 #	0.000	-0.058 #
정책만족도	0.048 #	-	0.048 #	0.031	-	0.031
지역				-0.019	-0.004	-0.023
막내 자녀 월령				-0.067 #	0.061 *	-0.005
모 연령				-0.089 *	-0.001	-0.09 *
모 학력				0.027	0.000	0.026
모 취업 여부				-0.078 *	0.053 **	-0.025
가구소득				-0.021	-0.004	-0.024

p 〈 .10, * p 〈 .05, ** p 〈 .01

2) 모형 II

모형 II는 아동, 가구 및 모의 특성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델이다.

2009년 자료 분석을 보면, 정책만족도(β=-.063) 이외에 거시변인 중 지원시설공급률(β=.068)이 유의도 10% 수준에서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지원시설공급률만 정의 방향이고 정책만족도는 부의 방향이다. 정책만족도가 부의 방향으로 나타난 점은 특이한 결과로, 정책만족도가 추가출산의사 결정 요인으로 전혀 작동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접효과는 정부지원 여부, 국공립 및 지원시설공급률이 모두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정책만족도에는 미시변인에서는 정부지원(β=.277), 거시변인 중에서는 지원시설공급률(β=.082)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2년 자료 분석에서는 2009년과 다른 경로계수를 보여주었다. 추가출산에는 미시변인 중 기관이용시간(β=.122)이 정의 방향으로, 거시변인 중에서는 유치원이용률(β=-.058)이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만족도에 대하여 미시변인 중 기관이용시간(β=.116), 거시변인 중 보육공급률(β=.06)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β=.053)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정책만족도 자체가 추가출산의사에 유의한 요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 통제변수가 없는 분석에서 유의도 10%에서 관련성을 보였던 정책만족도가 통제변수 투입으로 영향이 더욱 약화된 것이다.

[그림 3-23], [그림 3-24]는 2012년 자료의 통제변수 투입에 따라 분석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3-23〕 통제변수 미포함 미시-거시 통합 분석모형: 2012년 두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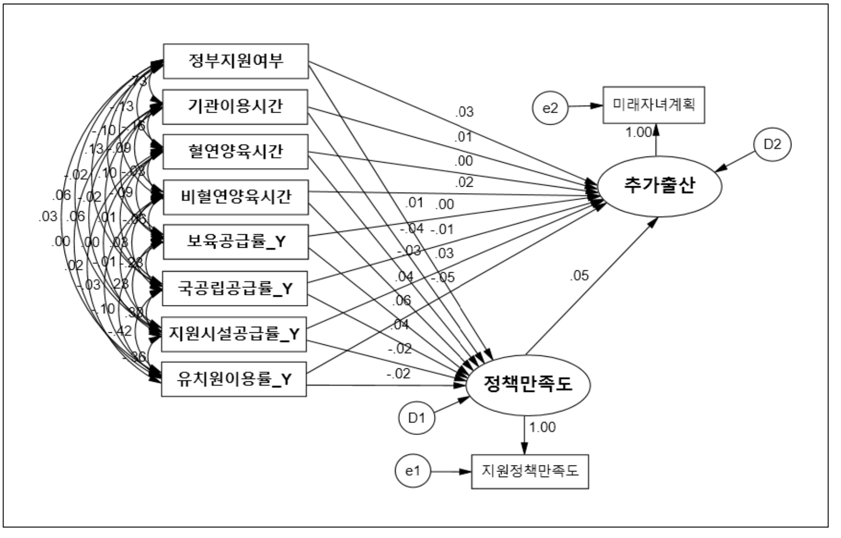

〔그림 3-24〕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분석모형: 2012년 두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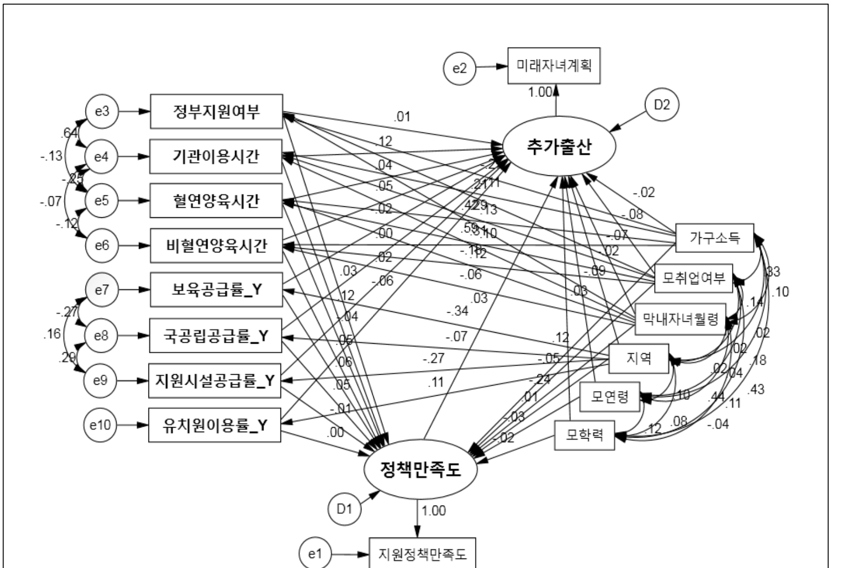

4. 요약 및 정책 시사점

〈표 3-30〉은 미시-거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추가출산의사 여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유의도 10% 이하 수준에서 관련이 있는 미시 및 거시변인들의 방향성과 유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시 분석과 비교하여 혈연양육시간의 유의성은 2012년 분석에서 부의 방향으로 유효하고 이 외 미시변수들의 유의도는 유사하다.

거시변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 보육 서비스 공급정도가 개인의 추가출산의사와 미약하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직접이라기보다는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 방식이 우세하다.

이러한 영향은 전체 가구 및 한 자녀 가구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전체적으로는 2009년은 국공립과 지원시설공급률이 유의도 10% 수준에서, 2012년은 보육공급률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모두 정의 방향으로 각각 유의도 5% 및 10%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가구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에 지원시설공급률이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책만족도를 통한 거시적 요인의 효과는 Rindfuss et al.(2011)의 노르웨이 거시-미시 통합 연구나 독일 연구에서와 같이 지역 내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개인의 출산 결정에 효과가 있음을 어느 정도는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보육사업의 성과로 나타난 보육이용률의 증가와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의 확대가 출산과 관련성이 없지 않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정책적으로 공공성 높은 기관 중심의 보육 서비스가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정부의 양육지원정책으로 공급과 이용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

다. 기관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표 3-30〉 추가출산의사에 대한 미시-거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 개요

	2009				201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전체								
정부지원 여부		+ #						
기관이용시간	- **	- #			- **			+ *
혈연양육시간						- #	- #	
비혈연양육시간		- #			- #			
보육공급률_Y						+ *		+ *
국공립공급률_Y		+ #				+ #		+ #
지원시설공급률_Y		+ #						
유치원이용률_Y								
정책만족도	+ #	na		na	+ ***	na	+ *	na
한 자녀 가구								
정부지원 여부		+ *		+ *				
기관이용시간	- **	- *		- #	- **			+ #
혈연양육시간								
비혈연양육시간					- **		- *	
보육공급률_Y								
국공립공급률_Y								
지원시설공급률_Y		+ *		+ *		+ *		
유치원이용률_Y								
정책만족도	+ *	na	+ *	na	+ ***	na	+ *	na
두 자녀 가구								
정부지원 여부	+ **			- *				
기관이용시간	- **						+ *	
혈연양육시간								
비혈연양육시간								
보육공급률_Y						+ #		
국공립공급률_Y				- #				
지원시설공급률_Y	+ *		+ #	- #				
유치원이용률_Y							- #	
정책만족도		na	- *	na	+ #	na		na

제 4 장 정책 제언

4 정책 제언

제1절 기본 방향

보육과 출산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보육과 출산은 미약한 수준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보육이나 유아교육에의 투자와 추가출산의사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매우 약하고 일관성도 낮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러 분석 중에서 종합적인 미시 및 거시-미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지원, 기관이용시간과 같은 미시적 요인이나 시·군·구의 보육공급률, 국공립공급률,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과 같은 거시 요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모의 보육지원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기관 서비스 이용시간은 특히 영아와 만 5세아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2년에 와서는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정책의 출산 관련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출산 결정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영유아기 투자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고, 여성 취업 자체가 출산에 대체로 부의 관련성을 보이므로 보육이나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출산에 기여한 바가 상쇄되거나 방향이 다르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OECD 국가 비교 연구를 보면, 출산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여성 취업률도 높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여야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

다. 그러나 미시자료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의 취업과 추가출산의사와의 관련성은 부적 관계이다. 이는 취업과 출산을 병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는 현금, 보육 서비스, 그리고 시간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 지원이 조화를 못 이루고 있다. 따라서 취업모들이 보육지원정책 자체에는 만족한다고 해도 추가출산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정책만족도도 보편적 지원 이후에는 취업부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최근에 모 취업이 보육정책만족도와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은 최근의 보육정책이 취업모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영유아 지원정책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한 채 확대일로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보육이나 유아교육정책이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 등 실 보육 수요와 보다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의 방향성을 몇 가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로는 보육지원정책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되도록 보육 서비스와 부모의 근로를 연계시켜야 한다. 보육이 보호와 교육의 합성어이고 두 가지 개념이 상당 부분 수렴되었지만 아동 연령에 따라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서비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보호의 주 대상인 영아에게는 특히 부모 근로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재보다 증가되어야 한다.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지원 이외에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여야 하는데, 보육료가 상한선 가격 규제인 상태에서 개인이 시설 투자 부담을 가진 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셋째, 전체적인 자녀양육지원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획일화된 기관 이용 비용 지원에서 비롯되는 불합리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절 정책 방향

1. 일하는 부모 지원

보육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의 관련성을 강화한다. 부모와 아동의 돌봄 필요 정도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의 수요와 재정 지원의 효율화뿐 아니라 아동이나 교사 관점에서도 필요한 정책 방향이다.

우선 맞춤형보육, 이용시간 이원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2016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일제 중심의 보육제도는 미취업모나 유휴인력이 있는 가정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므로(서문희 등, 2009), 이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6시간 정도의 단시간 보육시간을 마련하여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시간 보육이 익숙해진 부모, 보육료 지원 단가의 문제, 그동안 익숙해서 고착화된 어린이집 일과 운영, 교사의 안정적 운영 등의 이유로 아직 제도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12시간이지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약간 상회하고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5% 수준인데 모든 아동에게 명목상 12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과도 맞지 않는다. 사실 현재와 같이 자격을 구분하고 단기간과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자격을 주는 방식은 실제 이용과 많은 괴리를 낳는다. 종일형보육, 맞춤형보육은 부모 자격 기준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따른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지원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집 운영비 확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는 거점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 종일형보육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아동은 소수이다. 소수이지만 늦은 저녁이나 야간보육을 필요로 하는 일하는 부모 등 실수요층을 위해서는 거점어린이집이 필요하다. 휴일, 토요일, 야간보육 등은 수요가 많지 않으나 꼭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거점 형태의 어린이집 운영이 효율적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일정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해 지역을 구분하여 거점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이는 운영상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이어야 하므로, 인건비지원시설에 설치하여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시간제보육도 소요 비용 측면의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전국적인 시간제보육 지정기관 확산보다는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집중 확산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긴급보육바우처의 사용과 연계하는 방안도 부모의 선택지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거점시설 안에서 여러 가지 수요가 제한적인 보육 서비스의 하나로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2. 공공인프라 균형 배치

공공어린이집 균형 배치는 보육에서 가장 기본적 과제임에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지역별로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이집이 골고루 충분하게 공

급되어야 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등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비율은 평균 20% 정도이지만 최대는 68%인 반면에 최소 3%인 지역도 있다. 평균 미만인 지역은 평균에 도달하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총규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균형 배치도 염두에 두어 아동과 부모의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성을 부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은 인건비지원시설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운영 기준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선정 시에는 자가와 임대 기준 이외에 자기 자본이나 부채 비율을 기본 신청 요건으로 둘 필요가 있다. 대표자와 원장이 다르거나 대표자가 자주 변경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을 자주 바꾸는 대표자도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적합하지 않다. 평가인증 기준 점수는 전국 평균 이상은 되어야 한다. 운영 시에도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민간 인프라와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1급 교사 비율, 취약보육 실시, 보육료 수입 대비 기타 운영비 지출 비중, 투명한 재정 운영 등 주요 선정 기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녀양육지원 방식의 다양화

종일제보육 서비스 선호는 보육료 수준 및 지원 방식의 획일성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급격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획일화

된 종일제 서비스로 보편화되어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가가 다양한 지원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정책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서문희 등, 2014).

보육이나 유아교육 서비스 미이용 아동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편에서 보편적 수당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지원 체계 안에서 영아 부모 양육지원 방식으로 제도가 갖는 의미가 있다. 아동수당으로의 전환은 실정책적 효과가 무엇인지와 더불어 양육수당이 보육 서비스와 묶여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애로가 있다. 또한 현재 양육수당은 지원 수준이 낮다고 보는 부모들이 다수인데, 국가 재정상 어느 정도 수준의 아동수당을 책정할 수 있는지도 정책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혈연에 의한 자녀양육지원은 정부의 정책적 관심 범주 안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조부모 등 혈연에 의한 자녀양육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일하는 부모들은 혈연의 양육지원이 매우 결정적인 지원 자원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수당제도 시설보다는 조부모를 위한 육아 관련 교육, 정보 자료 제공 및 간헐적 공간 제공 등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어린이집이 하나의 열린 운영의 형태로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 조부모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혈연의 경우에는 공공아이돌보미가 있고, 또한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이 있다. 아이돌보미와 민간베이비시터 모두 부모들이 파견을 희망하는 시간대가 집중되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하는 부모가 많지는 않으나 틈새 서비스로서 수요는 상존하므로 아이 발달과 근로자 관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평균 가구소득 70% 이하만을 지원하는데, 지원 사업보다도 중산층 이외의 수요자를 위한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영리와 비영리, 소개업 및 직거래 등 여러 양상으로 작동하는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베이비시터 교육과 교육받은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시행하여 서비스의 질과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자녀양육지원 인프라도 정립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육아 도움 네트워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공간 제공은 필수 요소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에 1개 소씩 설치되어 있으나 공간 제공이 가능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육수당정책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이용 기관으로 최근에 확대되어 전국에 90개가 운영되고 있다. 우선은 설치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소한 시·군·구당 1개소씩 설치하고, 점차 아동 수 기준으로 권역별로 설치하여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안정성을 보장하고, 센터 간의 연계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조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 자녀양육지원 체계 일원화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자녀양육지원은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간의 정합성을 맞출 수 있는 조정 구조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아이돌봄지원과 같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이나 수준 간의 상대적 적절성을 높여야 한다. 영아종일제돌봄은 39만~91만 원으로 '가형'의 경우 0세 8만 5,000원, 1세 34만 원 정도 더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와 보육·교육 서

비스 중복 이용 금지 시간 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정교하지는 못하여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을 받을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분절적 사업 체계에서 비롯된다.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되는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어린이집 정부 지원 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담당 부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호 타 부처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예산 관련 결정 과정에서도 조직의 분리로 상호 비교 기회는 없다. 또한 아이돌보미와 보육의 신청·관리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다. 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정보 시스템 등 전달 체계와 관리 체계를 조정,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 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

고제이, 신윤정, 강신욱, 오미애, 안형석. (2015).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 자료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2006).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2006-2010.

김계수. (2009). 잠재성장 모델링과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한나래아카데미.

백선정, 고지영, 양정선, 백현식. (2011). 맞벌이 가정 내 조부모의 양육 현황 및 지원안 연구-영아가정을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서문희, 안재진, 최혜선, 相馬直子, 안진. (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박수연. (2009).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이윤진, 유해미, 송신영, 김세현. (2011). 출산 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이혜민. (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김은설, 최진, 안재진, 최혜선, 김유경, 조애저.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송헌재, 우석진. (2015).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양미선, 서문희, 김정민. (2014). 2014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 (2005). 내부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Ⅲ-1.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 아이돌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4.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이삼식, 최효진, 정혜은. (2010).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유계숙, 윤홍식, 최효진. (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3-71.

전혜정, 조규영, 박민경, 한세황, Wassel, J. I. (2013).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3), pp.515-536.

조윤주. (2012). 손자녀 양육 참여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pp.267-294.

진지혜, 안정신. (2012). 유아의 기질과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한국노년학, 32(4), pp.1025-1039.

최영, 차승연. (2013). 손자녀 돌봄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40(3), pp.183-206.

하정화, 김현지, 이옥경, 허정윤. (2013). 부산지역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실태 및 욕구 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3-07.

Baizan. (2009). Regional Child 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Decisions in Spain. *Demographic Research*. Vol 21(27), pp.803-842.

Bauernschuster, Stefan, Timo Hener and Helmut Rainer. (2013). "*Does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Increase Birth Rates? Evidence from a Low-Fertility Country*", Ifo Working Paper No. 158, 2013 Leibniz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

Duncan, T. E., Duncan, S. C., Strycker, A. L., Li F., Alpert, A. (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Guthier, A. H.,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pp.2295-2306.

Haan, P. & Wrohlich, K. (2009). *Can child care policy encourage employment and fertility? Evidence from a structural model.* DIW Berlin Discussion Papers.

Hank & Kreyenfeld. (2001).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Care in Western Germany*. MPIDR Working paper WP 2001-019. July 2001.

Hilgemand and Butts. (2009).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_A Welfare Regime Paradox.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8(1), March 2009, pp.103-117.

Hiroshi Yoshida. (2006). *Lowest Low Fertility Governmemtal Action in Japan: A Comment*.

Lappegård, T. (2010).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Norway. *Eur J Population*, 26: pp.99-116.

Luci & Thevenon. (2011). *The Impact of Family Policy Packag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Rindfuss Ronald R., David K. Guilkey, S. Philip Morgan, and Øystein KRavdal. (2010). *Child care Availiability and Fertility in Norway Population Dev*. Rev. 2010: 36(4): pp.725-748.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619호, 2014. 5. 20. 일부 개정], 이 조항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함. p.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7호, 2016. 5. 29. 일부 개정]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68호, 2016. 6. 28. 일부 개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보도자료〉
교육부 2014. 3. 28. 보도자료. ‘유치원 2014년 2월 정기 정보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
보건복지부 2016. 4. 29.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 공표’
여성가족부 2013. 9 13. 보도자료, “온 마을이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제주시청 2016. 3. 28. 보도자료, ‘수놀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공모’

〈인터넷 자료〉
관악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자조모임 http://cafe.daum.net/gwanak0679/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구로구보건소 예비 할아버지 할머니 육아교실 http://www.guro.go.kr/health/NR_index.do
내 손주학교 http://naesonju.com/
서초구보건소 예비 할머니·할아버지 육아교실 http://www.seocho.go.kr/site/sh/main.do
서초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
성북구 보건소 손주사랑 육아교실 https://bogunso.seongbuk.go.kr/
아이케어센터 http://www.sicare.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 2016 평가인증 관련 통계.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http://www.kisf.org
Amounts transferred to families with children(Last updated: 2014-05-07) https://www.regjeringen.no/en/topics/families-and-children/ https://www.regjeringen.no/en/topics/families-and-children/

〈부표 1〉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 전체

경로	2009		2012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B)
정부지원 여부 → 정책만족도	0.287	0.561***	0.009	0.02
기관이용시간 → 정책만족도	-0.059	-0.015*	0.101	0.035*
비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06	-0.005	0	0
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39	0.01#	-0.035	-0.016
정부지원 여부 → 추가출산	0.014	0.014	0.021	0.018
기관이용시간 → 추가출산	-0.04	-0.006#	0.03	0.004
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27	0.003	0.016	0.003
비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23	0.009	-0.031	-0.014#
정책만족도 → 추가출산	0.022	0.011	0.04	0.014*
통제변수 투입 결과				
모 취업 여부 → 정부지원 여부	0.181	0.175***	0.232	0.238***
가구소득 → 정부지원 여부	-0.261	-0.084***	-0.108	-0.038***
막내 자녀 월령 → 기관이용시간	0.476	0.081***	0.37	0.055***
모 취업 여부 → 기관이용시간	0.299	2.289***	0.325	2.286***
막내 자녀 월령 → 혈연양육시간	-0.166	-0.026***	-0.159	-0.018***
모 취업 여부 → 혈연양육시간	0.434	3.065***	0.343	1.8***
가구소득 → 혈연양육시간	0.068	0.16***	0.09	0.164***
막내 자녀 월령 → 비혈연양육시간	-0.097	-0.005***	-0.07	-0.003***
모 취업 여부 → 비혈연양육시간	0.14	0.321***	0.12	0.24***
가구소득 → 비혈연양육시간	0.071	0.055***	0.093	0.065***
지역 → 정책만족도	-0.053	-0.126*	-0.04	-0.118*
자녀 수 → 정책만족도	0.01	0.014	0.005	0.008
막내 자녀 월령 → 정책만족도	-0.026	-0.001	-0.21	-0.011***
모 연령 → 정책만족도	-0.026	-0.005	-0.027	-0.007
모 학력 → 정책만족도	-0.037	-0.033#	-0.007	-0.008
모 취업 여부 → 정책만족도	0.103	0.193*	-0.057	-0.137*
가구소득 → 정책만족도	-0.152	-0.096***	0.088	0.074***
지역 → 추가출산	-0.036	-0.042*	0.003	0.003
자녀 수 → 추가출산	-0.39	-0.263***	-0.401	-0.247***
막내 자녀 월령 → 추가출산	-0.102	-0.002***	-0.131	-0.002***
모 연령 → 추가출산	-0.204	-0.02***	-0.16	-0.015***
모 학력 → 추가출산	0.04	0.017*	0.025	0.01
모 취업 여부 → 추가출산	-0.077	-0.072*	-0.046	-0.04*
가구소득 → 추가출산	-0.016	-0.005	-0.002	-0.00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2〉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 한 자녀 가구

경로			2009		2012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B)
정부지원 여부	→	정책만족도	0.286	0.562***	0.001	0.003
기관이용시간	→	정책만족도	-0.095	-0.021#	0.101	0.034#
비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49	0.01	-0.032	-0.035
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03	0.002	-0.038	-0.015
정부지원 여부	→	추가출산	-0.012	-0.014	0.021	0.021
기관이용시간	→	추가출산	-0.058	-0.008	0.082	0.012
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32	0.004	0.03	0.005
비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15	0.006	-0.077	-0.037**
정책만족도	→	추가출산	0.063	0.038	0.067	0.029*
통제변수 투입 결과						
모 취업 여부	→	정부지원 여부	0.231	0.197***	0.224	0.229***
가구소득	→	정부지원 여부	-0.305	-0.088***	-0.1	-0.035***
막내 자녀 월령	→	기관이용시간	0.52	0.095***	0.354	0.057***
모 취업 여부	→	기관이용시간	0.275	2.064***	0.307	2.179***
막내 자녀 월령	→	혈연양육시간	-0.138	-0.028***	-0.1	-0.014***
모 취업 여부	→	혈연양육시간	0.493	4.019***	0.374	2.334***
가구소득	→	혈연양육시간	0.062	0.17*	0.081	0.174*
막내 자녀 월령	→	비혈연양육시간	-0.078	-0.005*	-0.072	-0.004*
모 취업 여부	→	비혈연양육시간	0.136	0.332***	0.137	0.3***
가구소득	→	비혈연양육시간	0.08	0.066*	0.092	0.07**
지역	→	정책만족도	-0.037	-0.082	-0.051	-0.163#
막내 자녀 월령	→	정책만족도	-0.046	-0.002	0.091	0.076*
모 연령	→	정책만족도	0.007	0.001	-0.016	-0.004
모 학력	→	정책만족도	-0.093	-0.073**	-0.009	-0.011
모 취업 여부	→	정책만족도	0.031	0.053	-0.186	-0.01***
가구소득	→	정책만족도	-0.082	-0.046*	-0.069	-0.166#
지역	→	추가출산	-0.041	-0.056	0.036	0.05
막내 자녀 월령	→	추가출산	-0.157	-0.004***	-0.238	-0.006***
모 연령	→	추가출산	-0.157	-0.017***	-0.257	-0.03***
모 학력	→	추가출산	0.054	0.026	0.045	0.022
모 취업 여부	→	추가출산	-0.104	-0.104*	-0.12	-0.125**
가구소득	→	추가출산	0.029	0.01	0.049	0.018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3〉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 두 자녀 가구

경로			2009		2012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B)
정부지원 여부	→	정책만족도	0.269	0.53***	0.027	0.066
기관이용시간	→	정책만족도	-0.023	-0.006	0.107	0.039*
비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12	0.004	0.046	0.057
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25	-0.024	-0.04	-0.021
정부지원 여부	→	추가출산	0.056	0.037	0.002	0.001
기관이용시간	→	추가출산	-0.013	-0.001	0.112	0.008*
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48	0.005	0.034	0.003
비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15	0.005	0.047	0.011
정책만족도	→	추가출산	-0.057	-0.019#	0.033	0.006
통제변수 투입 결과						
모 취업 여부	→	정부지원 여부	0.138	0.137***	0.23	0.231***
가구소득	→	정부지원 여부	-0.289	-0.096***	-0.163	-0.058***
막내 자녀 월령	→	기관이용시간	0.46	0.076***	0.404	0.058***
모 취업 여부	→	기관이용시간	0.296	2.266***	0.316	2.139***
막내 자녀 월령	→	혈연양육시간	-0.17	-0.024***	-0.178	-0.017***
모 취업 여부	→	혈연양육시간	0.419	2.758***	0.321	1.484***
가구소득	→	혈연양육시간	0.024	0.054	0.109	0.178***
막내 자녀 월령	→	비혈연양육시간	-0.102	-0.004***	-0.06	-0.003*
모 취업 여부	→	비혈연양육시간	0.131	0.263***	0.12	0.24***
가구소득	→	비혈연양육시간	0.072	0.048*	0.091	0.064**
지역	→	정책만족도	-0.046	-0.112#	-0.013	-0.039
막내 자녀 월령	→	정책만족도	0.003	0	-0.237	-0.012***
모 연령	→	정책만족도	-0.036	-0.009	-0.034	-0.01
모 학력	→	정책만족도	-0.02	-0.018	-0.019	-0.023
모 취업 여부	→	정책만족도	0.046	0.091	-0.05	-0.123
가구소득	→	정책만족도	-0.205	-0.135***	0.108	0.093**
지역	→	추가출산	-0.037	-0.03	-0.022	-0.013
막내 자녀 월령	→	추가출산	-0.028	0	-0.067	-0.001#
모 연령	→	추가출산	-0.19	-0.015***	-0.088	-0.005**
모 학력	→	추가출산	-0.015	-0.005	0.025	0.006
모 취업 여부	→	추가출산	-0.065	-0.043#	-0.074	-0.035*
가구소득	→	추가출산	-0.044	-0.01	-0.017	-0.00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4〉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 전체

경로			2009		2012	
			표준화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정부지원 여부	→	정책만족도	0.296***	0.564	0.01	0.022
기관이용시간	→	정책만족도	-0.079*	-0.018	0.11**	0.034
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26	0.007	-0.032	-0.015
비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14	-0.011	-0.002	-0.002
보육공급률_Y	→	정책만족도	-0.011	-0.001	0.041#	0.004
국공립공급률_Y	→	정책만족도	0.038	0.008	0.037	0.012
지원시설공급률_Y	→	정책만족도	0.086***	0.009	0.018	0.003
유치원이용률_Y	→	정책만족도	-0.013	-0.001	-0.014	-0.002
정부지원 여부	→	추가출산	0.011	0.01	0.021	0.018
기관이용시간	→	추가출산	-0.046	-0.005	0.032	0.004
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26	0.003	0.016	0.003
비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22	0.009	-0.03#	-0.013
정책만족도	→	추가출산	0.019	0.009	0.04*	0.014
보육공급률_Y	→	추가출산	0.021	0.001	0.005	0
국공립공급률_Y	→	추가출산	-0.002	0	-0.025	-0.003
지원시설공급률_Y	→	추가출산	0.027	0.001	0.027	0.002
유치원이용률_Y	→	추가출산	-0.013	-0.001	-0.002	0
통제변수 투입 결과						
지역	→	보육공급률_Y	-0.211***	-7.329	-0.351***	-9.978
지역	→	국공립공급률_Y	0.01	0.109	-0.072***	-0.646
지역	→	지원시설공급률_Y	-0.264***	-5.756	-0.275***	-4.471
지역	→	유치원이용률_Y	-0.021	-0.487	0.1***	2.146
막내 자녀 월령	→	정부지원 여부	0.401***	0.009	0.471***	0.01
모 취업 여부	→	정부지원 여부	0.14***	0.137	0.205***	0.212
가구소득	→	정부지원 여부	-0.351***	-0.116	-0.218***	-0.078
막내 자녀 월령	→	기관이용시간	0.607***	0.113	0.609***	0.102
모 취업 여부	→	기관이용시간	0.288***	2.401	0.289***	2.271
가구소득	→	기관이용시간	-0.13***	-0.363	-0.102***	-0.278
막내 자녀 월령	→	혈연양육시간	-0.166***	-0.026	-0.16***	-0.018
모 취업 여부	→	혈연양육시간	0.42***	2.969	0.337***	1.77
가구소득	→	혈연양육시간	0.109***	0.258	0.107***	0.195
막내 자녀 월령	→	비혈연양육시간	-0.097***	-0.005	-0.071***	-0.003
모 취업 여부	→	비혈연양육시간	0.135***	0.31	0.118***	0.236
가구소득	→	비혈연양육시간	0.086***	0.066	0.1***	0.07
지역	→	정책만족도	-0.034#	-0.081	-0.017	-0.051
자녀 수	→	정책만족도	0.004	0.005	0.003	0.005
막내 자녀 월령	→	정책만족도	-0.024	-0.001	-0.208***	-0.011
모 연령	→	정책만족도	-0.027	-0.005	-0.024	-0.007
모 학력	→	정책만족도	-0.037#	-0.032	-0.004	-0.004
모 취업 여부	→	정책만족도	0.047#	0.088	-0.061	-0.146
가구소득	→	정책만족도	-0.147***	-0.092	0.091***	0.076
지역	→	추가출산	-0.025	-0.03	0.01	0.01
자녀 수	→	추가출산	-0.392***	-0.265	***	***
막내 자녀 월령	→	추가출산	-0.102***	-0.002	-0.13***	-0.002
모 연령	→	추가출산	-0.204***	-0.02	-0.159***	-0.015
모 학력	→	추가출산	0.038*	0.016	0.025	0.01
모 취업 여부	→	추가출산	-0.049*	-0.046	-0.048	-0.042
가구소득	→	추가출산	-0.013	-0.004	0.001	0

p〈.10, * p〈.05, ** p〈.01, *** p〈.001

〈부표 5〉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 한 자녀 가구

경로	2009		2012	
	표준화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정부지원 여부 → 정책만족도	0.29***	0.553	0.005	0.011
기관이용시간 → 정책만족도	-0.107#	-0.021	0.107	0.032
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45	0.009	-0.034	-0.013
비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	0	-0.04	-0.043
보육공급률_Y → 정책만족도	-0.015	-0.001	0.022	0.002
국공립공급률_Y → 정책만족도	0.001	0	0.041	0.013
지원시설공급률_Y → 정책만족도	0.068#	0.007	0.048	0.01
유치원이용률_Y → 정책만족도	-0.01	-0.001	-0.012	-0.002
정부지원 여부 → 추가출산	-0.014	-0.016	0.017	0.017
기관이용시간 → 추가출산	-0.062	-0.008	0.095	0.012
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33	0.004	0.03	0.005
비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16	0.006	-0.073*	-0.034
정책만족도 → 추가출산	0.063*	0.038	0.069*	0.03
보육공급률_Y → 추가출산	0.021	0.001	0.012	0.001
국공립공급률_Y → 추가출산	0.003	0	-0.023	-0.003
지원시설공급률_Y → 추가출산	-0.003	0	0.017	0.001
유치원이용률_Y → 추가출산	0.019	0.001	0.016	0.001
통제변수 투입 결과				
지역 → 보육공급률_Y	-0.268***	-9.157	-0.407***	-12.125
지역 → 국공립공급률_Y	0.035*	0.413	-0.075*	-0.741
지역 → 지원시설공급률_Y	-0.239***	-5.01	-0.232***	-3.684
지역 → 유치원이용률_Y	-0.034	-0.822	0.03	0.71
막내 자녀 월령 → 정부지원여부	0.431***	0.009	0.484***	0.011
모 취업 여부 → 정부지원여부	0.164***	0.143	0.218***	0.225
가구소득 → 정부지원여부	-0.362***	-0.107	-0.208***	-0.075
막내 자녀 월령 → 기관이용시간	0.643***	0.129	0.617***	0.111
모 취업 여부 → 기관이용시간	0.267***	2.202	0.284***	2.274
가구소득 → 기관이용시간	-0.117***	-0.327	-0.102***	-0.283
막내 자녀 월령 → 혈연양육시간	-0.136***	-0.027	-0.1***	-0.014
모 취업 여부 → 혈연양육시간	0.471***	3.847	0.366***	2.283
가구소득 → 혈연양육시간	0.108***	0.296	0.099**	0.215
막내 자녀 월령 → 비혈연양육시간	-0.077*	-0.005	-0.073*	-0.004
모 취업 여부 → 비혈연양육시간	0.129***	0.316	0.133***	0.293
가구소득 → 비혈연양육시간	0.094***	0.078	0.1**	0.076
지역 → 정책만족도	-0.025	-0.056	-0.027	-0.087
막내 자녀 월령 → 정책만족도	-0.045	-0.002	-0.178***	-0.01
모 연령 → 정책만족도	0.009	0.002	-0.02	-0.005
모 학력 → 정책만족도	-0.098**	-0.076	-0.005	-0.006
모 취업 여부 → 정책만족도	0.029	0.049	-0.071#	-0.169
가구소득 → 정책만족도	-0.081*	-0.045	0.085*	0.07
지역 → 추가출산	-0.036	-0.049	0.042	0.058
막내 자녀 월령 → 추가출산	-0.156***	-0.004	-0.24***	-0.006
모 연령 → 추가출산	-0.155***	-0.017	-0.256***	-0.03
모 학력 → 추가출산	0.055	0.026	0.046	0.023
모 취업 여부 → 추가출산	-0.104*	-0.105	-0.123**	-0.126
가구소득 → 추가출산	0.032	0.011	0.055	0.0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6〉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 두 자녀 가구

경로			2009		2012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 계수(B)
정부지원 여부	→	정책만족도	0.277***	0.537	0.027	0.065
기관이용시간	→	정책만족도	-0.033	-0.008	0.116*	0.038
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09	0.003	-0.038	-0.02
비혈연양육시간	→	정책만족도	-0.028	-0.027	0.046	0.056
보육공급률_Y	→	정책만족도	-0.027	-0.002	0.06#	0.006
국공립공급률_Y	→	정책만족도	0.044	0.01	0.053#	0.018
지원시설공급률_Y	→	정책만족도	0.082*	0.009	-0.01	-0.002
유치원이용률_Y	→	정책만족도	-0.007	-0.001	-0.004	-0.001
정부지원 여부	→	추가출산	0.049	0.031	0.007	0.003
기관이용시간	→	추가출산	-0.018	-0.001	0.122*	0.008
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5	0.005	0.035	0.004
비혈연양육시간	→	추가출산	0.015	0.005	0.046	0.011
정책만족도	→	추가출산	-0.063*	-0.021	0.031	0.006
보육공급률_Y	→	추가출산	0.037	0.001	-0.023	0
국공립공급률_Y	→	추가출산	-0.029	-0.002	-0.001	0
지원시설공급률_Y	→	추가출산	0.068#	0.003	0.019	0.001
유치원이용률_Y	→	추가출산	-0.044	-0.002	-0.058*	-0.002
통제변수 투입 결과						
지역	→	보육공급률_Y	-0.187***	-6.619	-0.342***	-9.508
지역	→	국공립공급률_Y	0.035	0.397	-0.072*	-0.628
지역	→	지원시설공급률_Y	-0.233***	-5.064	-0.265***	-4.243
지역	→	유치원이용률_Y	-0.043	-0.966	0.107***	2.274
막내 자녀 월령	→	정부지원 여부	0.357***	0.008	0.415***	0.009
모 취업 여부	→	정부지원 여부	0.117***	0.119	0.206***	0.21
가구소득	→	정부지원 여부	-0.383***	-0.131	-0.272***	-0.098
막내 자녀 월령	→	기관이용시간	0.581***	0.104	0.592***	0.093
모 취업 여부	→	기관이용시간	0.292***	2.418	0.294***	2.19
가구소득	→	기관이용시간	-0.134***	-0.372	-0.115***	-0.301
막내 자녀 월령	→	혈연양육시간	-0.171***	-0.024	-0.179***	-0.017
모 취업 여부	→	혈연양육시간	0.406***	2.68	0.314***	1.453
가구소득	→	혈연양육시간	0.066*	0.145	0.129***	0.212
막내 자녀 월령	→	비혈연양육시간	-0.102***	-0.004	-0.061*	-0.003
모 취업 여부	→	비혈연양육시간	0.127***	0.255	0.117***	0.234
가구소득	→	비혈연양육시간	0.085*	0.057	0.1***	0.07
지역	→	정책만족도	-0.033	-0.082	0.008	0.024
막내 자녀 월령	→	정책만족도	0.002	0	-0.239***	-0.012
모 연령	→	정책만족도	-0.038	-0.009	-0.033	-0.01
모 학력	→	정책만족도	-0.023	-0.022	-0.015	-0.018
모 취업 여부	→	정책만족도	0.036	0.07	-0.054	-0.131
가구소득	→	정책만족도	-0.197***	-0.13	0.116***	0.1
지역	→	추가출산	-0.017	-0.014	-0.019	-0.011
막내 자녀 월령	→	추가출산	-0.025	0	-0.067#	-0.001
모 연령	→	추가출산	-0.19***	-0.015	-0.089**	-0.005
모 학력	→	추가출산	-0.016	-0.005	0.027	0.006
모 취업 여부	→	추가출산	-0.074*	-0.049	-0.078*	-0.036
가구소득	→	추가출산	-0.042	-0.009	-0.021	-0.003

p 〈.10, * p 〈 .05, ** p 〈 .01, *** p 〈 .001

〔부그림 1〕 통제변수 미포함 연구모형: 2009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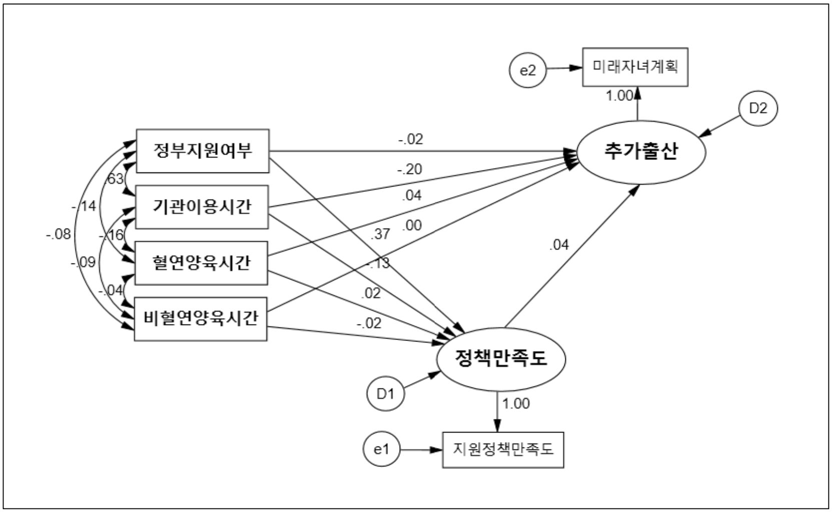

〔부그림 2〕 통제변수 포함 연구모형: 2009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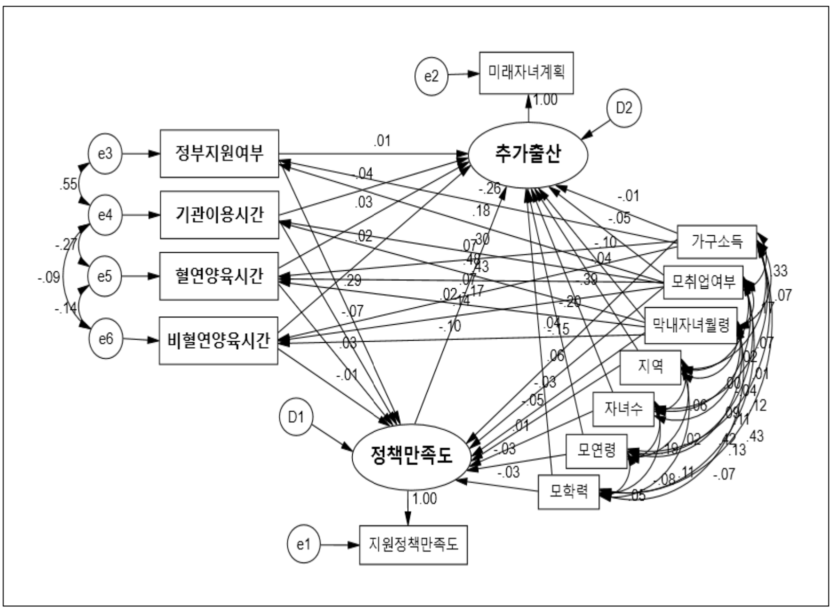

〔부그림 3〕 통제변수 미포함 연구모형: 2009년 한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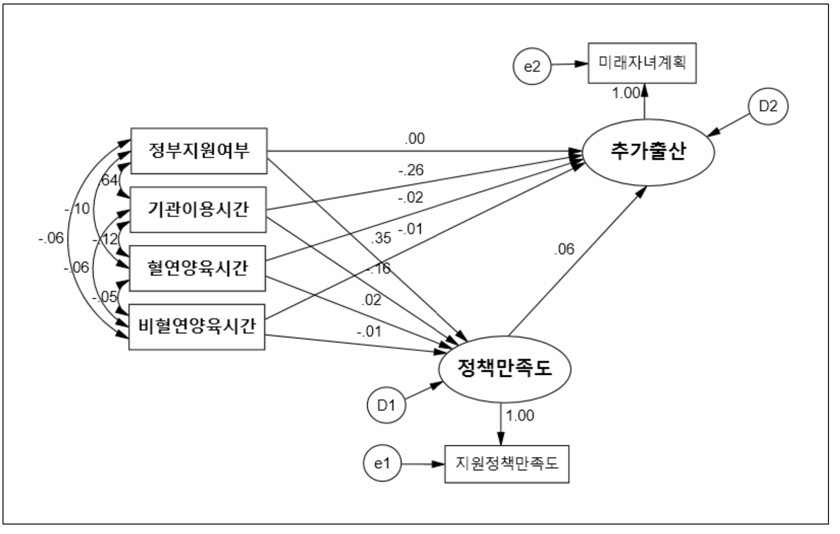

〔부그림 4〕 통제변수 포함 연구모형: 2009년 한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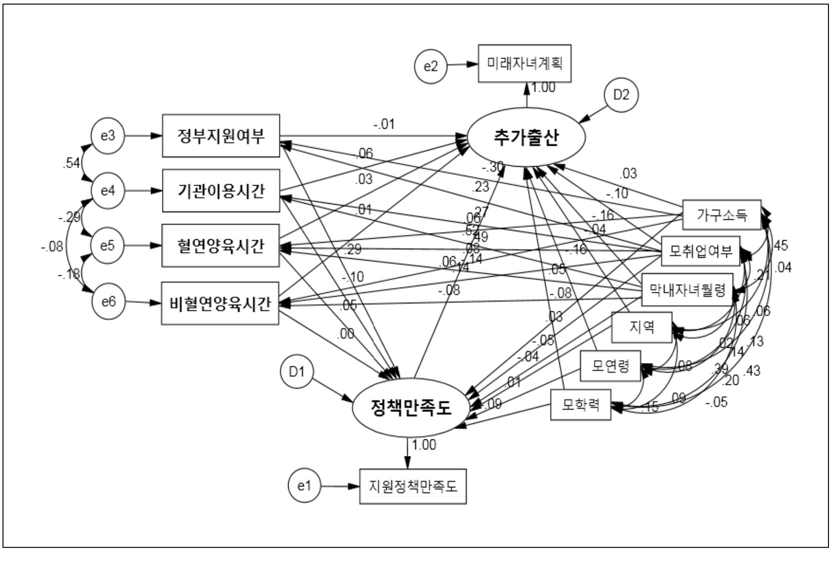

〔부그림 5〕 통제변수 미포함 연구모형: 2009년 두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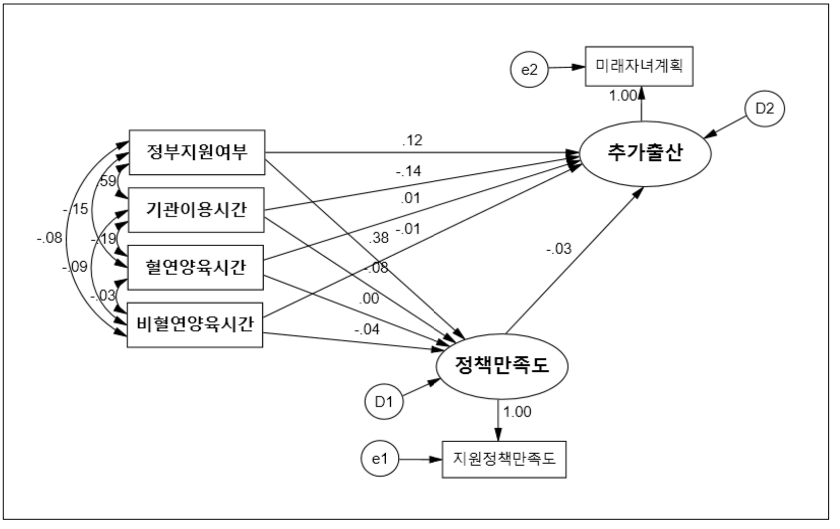

〔부그림 6〕 통제변수 포함 연구모형: 2009년 두 자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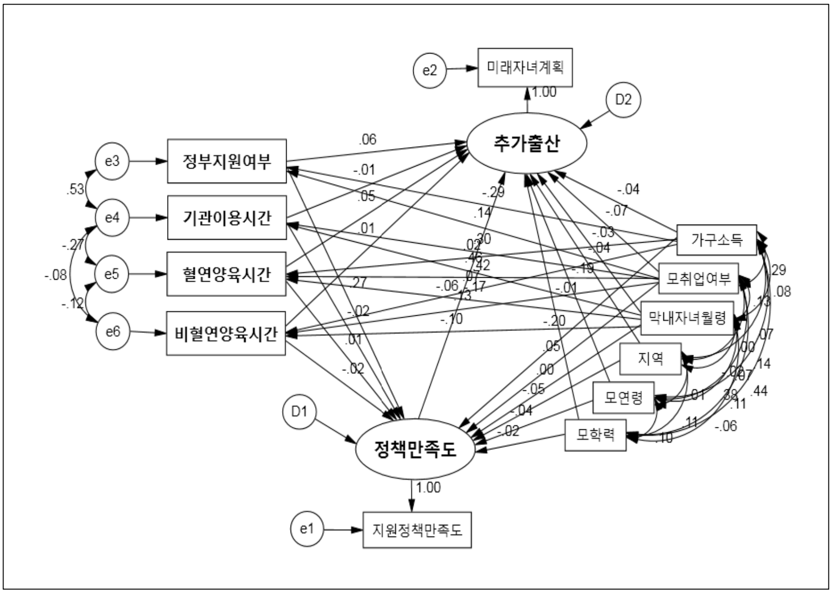

〔부그림 7〕 통제변수 미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2009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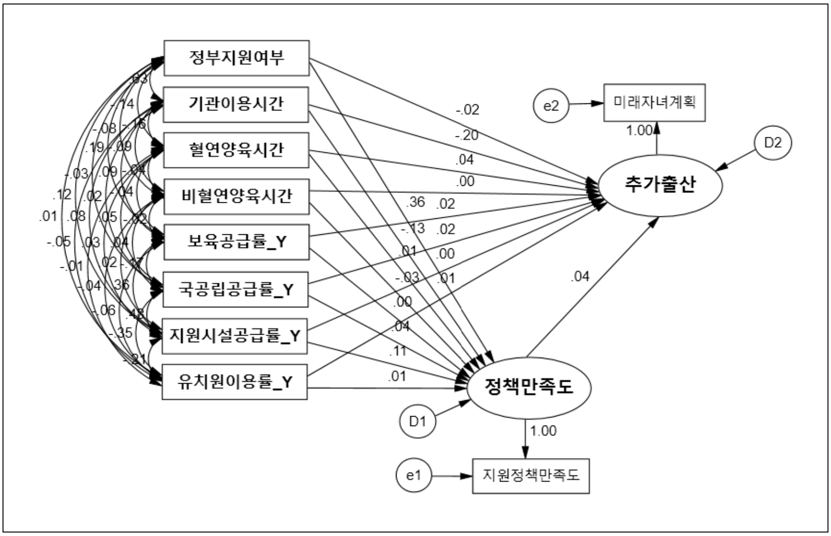

〔부그림 8〕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2009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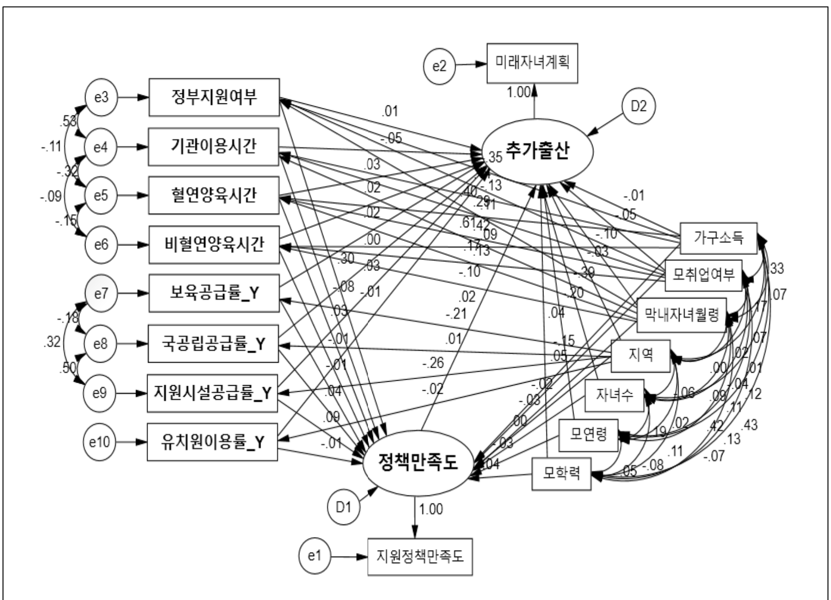

〔부그림 9〕 통제변수 미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2009년 한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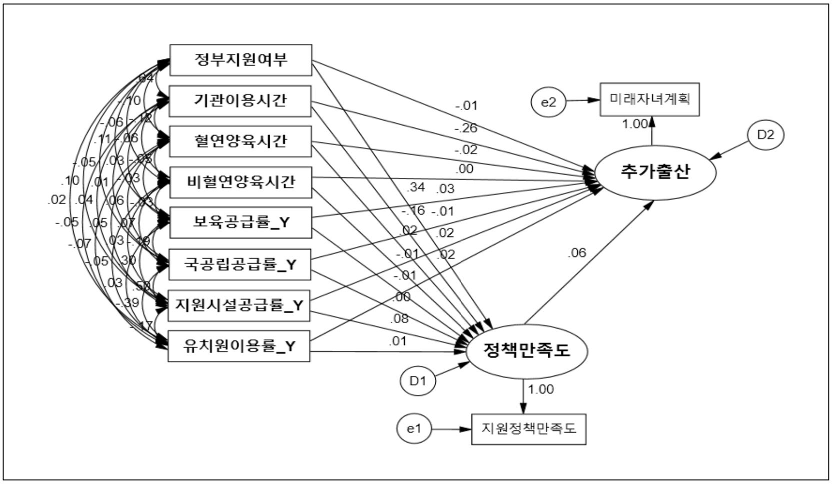

〔부그림 10〕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연구모형: 2009년 한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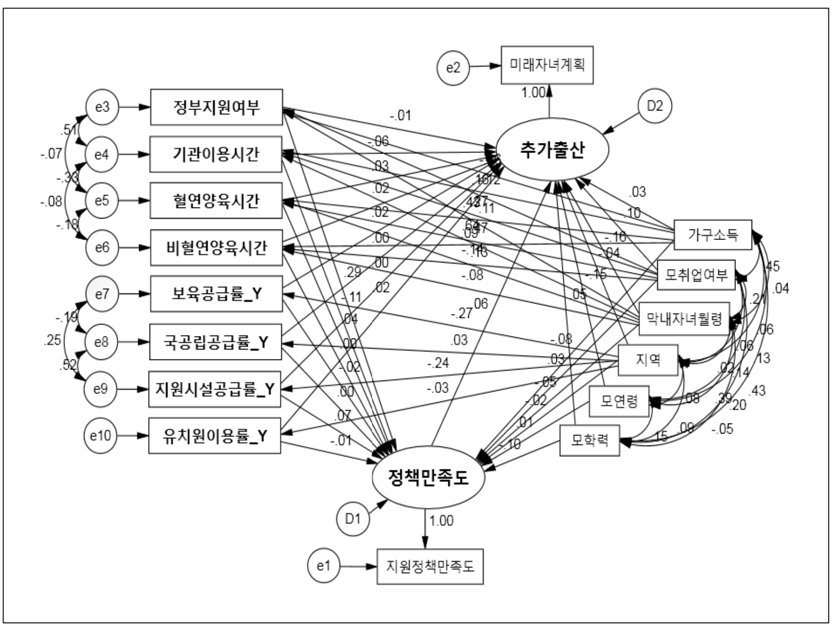

〔부그림 11〕 통제변수 미포함 미시-거시 통합 분석모형: 2009년 두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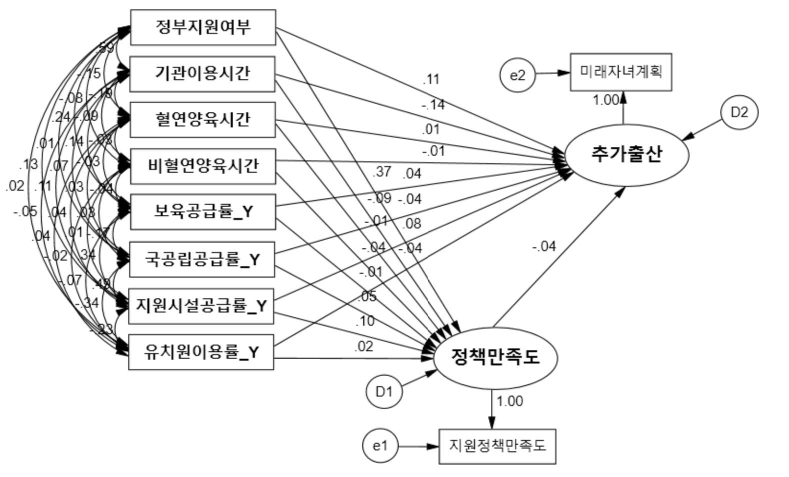

〔부그림 12〕 통제변수 포함 미시-거시 통합 분석모형: 2009년 두 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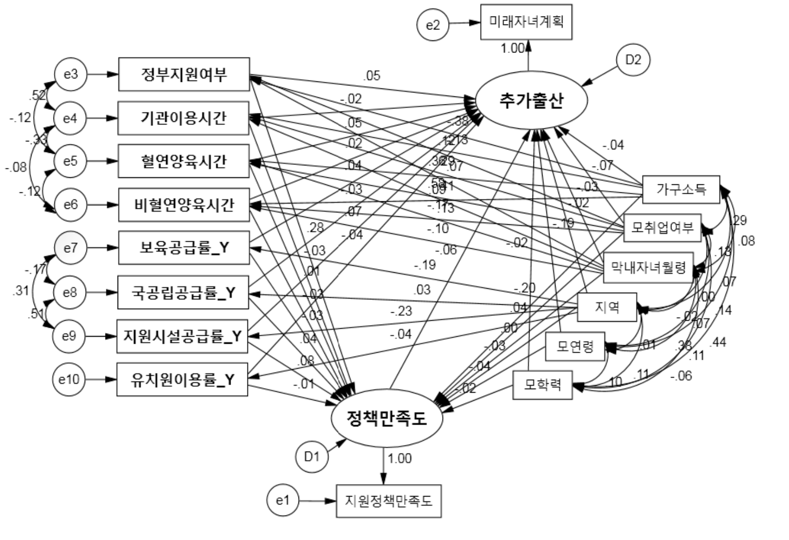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